

제 1824 호
1994. 5.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종
편집인 : 공 보 관 김 우 석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연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려

● 조 려

제 3098 호	서울특별시상수도대입수관사공감독업부위탁운영에관한조례	3
제 3100 호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제 3101 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5
제 3102 호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	5
제 3103 호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6
제 3104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6

ㄱ 규 칙

제 2517 호	서울특별시부정경쟁심의회규칙폐지규칙	9
----------	--------------------	---

(이면계속)

영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새물결 새바람 희망찬 신한국”

63-1111

제 2618 호	서울특별시채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9
제 261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0
● 공 고		
제 1994-162 호	소방설비공사사업영업정지공고	12
제 1994-163 호	소방설비공사사업영업정지공고	13
제 1994-164 호	공인폐기및신조교부공고	13
제 1994-165 호	1994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용자계획공고	14
제 1994-166 호	제2중전기공사사업면허업제영업정지처분공고	15
제 1994-168 호	시의회부의안건공고	16
제 1994-170 호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및지정취소공고	16
● 예 규		
제 587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	29
● 구 고 시		
제 1994-1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마포)	35
제 1994-2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변경승인(양천)	36
제 1994-21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구로)	36
제 1994-2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강남)	36
제 1994-3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성북)	37
제 1994-3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지적승인내용정정(성북)	38
● 구 공 고		
제 1994-5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양천)	38
제 1994-6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동작)	39
제 1994-7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동작)	39
제 1994-87 호	건설업양도인가공고(용산)	40
제 1994-9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종구)	40
제 1994-98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송파)	40
제 1994-9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송파)	40
제 1994-10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송파)	41
제 1994-109 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관악)	41
제 1994-1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은평)	41
제 1994-118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동대문)	43
제 1994-136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강남)	43
제 1994-154 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서초)	49
제 1994-155 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서초)	49
● 사업소고시		
제 1994-59 호	하천점용허가	49
● 건설부고시		
제 1994-164 호	사업인정고시	50
● 경찰청예규		
제 22 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칙중개정규칙	52
● 인사발령		
		54
● 공지사항		
		67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이어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3099호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배급수관 시공감독업무 중 일부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급수관 시공에 관한 감독업무 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
2. 사용자제 품질의 적합성 여부 확인
3. 배급수관 시공 공사장 안전상태 확인
4. 기타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배급수관 시공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항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급수관 시공확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상수도 운영관리지침 시행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직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감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임직원의 인사조치 및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와 제6조의 보고 및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수탁자에게 위탁업무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이 제①항의 규정이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위탁해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겸업금지) ①설계법인 또는 단체는 감리업무를 전담한다.

②시공업체 법인 또는 단체는 설계나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 배급수관 시공 감독업무 중 일부를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 감독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함(제2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감사사항을 규정함(제4조, 제6조).

○ 기타 해지사유를 정함(제7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3100호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 지방공사상남병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병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2개월 전액”을 “35일 전까지”로 한다.

제17조 중 “6월내”를 “3월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병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

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의 조문 중 동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병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병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년도 개시 2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6조).

다. 병원의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6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내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7조).

라. 병원의 손익금 처리방법에 이력준비금의 적립과 부채상환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3101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세입징수관·지출관·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을 “징수관·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 13981호 1993. 9. 23)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사업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직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인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정한 용어와 기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함(안 제8조제1항).

○ 세입징수관·지출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 등 회계관계직원을 지방재정법에 정한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으로 함(안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3102호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자당시 거주지 구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 전세자금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나 상환기간 도래 전에 용자수혜자가 타 구로 전출시에는 용자금융 일시 상환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 타 구로 전출시에도 2년 동안은 전세자금의 용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전세임가의 주거안정용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용자만을 당시의 거주지 구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때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안 제8조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3103호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사회단체등록에관한징수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동료제가 신고제로 개정)으로 종전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된 수수료징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사회단체등록시 수수료 6,000원, 사회단체변경등록시 2,000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3104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를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또는 시의회 사무처장에게”로 한다.

〈별표〉의 내부국란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1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p> <p>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명령,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보 임용해제 포함) 의원면직</p> <p>나.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 해당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 명령</p> <p>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명령</p> <p>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0조의 4, 5·제60조·제63조·제65조.</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5</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5</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제16조</p> <p>○ 공무원외어행규정 제9조</p>	<p>시의회 사무처장</p> <p>3급 이상 공무원 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 연구원장 및 병원장 포함)</p> <p>4급 및 5급 공무원 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 촌지도소장 포함)</p> <p>5급 이상 공무원 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 구청장</p>
<p><별표>의 보사환경국란 중 제59호·제60호·제82호를 삭제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안이유 및 주요골자>—————</p> <p>1. 제안이유</p> <p>□ 시의회 및 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인사권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p> <p>○ 수입대상기관에 시의회 사무처장을 추가하고</p>	<p>○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등 일부 임용권의 위임과</p> <p>○ 시의회 및 사업소 소속직원에 대한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 명령을 추가 위임하고</p> <p>□ 기 위임된 사무 중 법령개정으로 인한 처리권자 변경, 위임의 실효성이 없는 사무를 환수하기 위함.</p> <p>2. 주요골자</p> <p>□ 수입기관 추가: 시의회 사무처장</p>	

□ 위임사무 내역				
* () 내는 일부 환수				
구분	개	신규 위임	위임법의 확대	환 수
수입기관				
계	7건	2	1	4 (1)
구 청 장	4건	1		3
사 업 소 장	2건		1	1 (1)
시의회 사무처장	1건	1		
□ 위임 유형별 내역 (신규위임: 2건)				
소 관 국	사 무 명	수입기관	사 유	
내 부 국	11. 공무원 일부 임용권 ○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회 회내진보·휴직·복직 등 및 기능 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의원면적 13. 지킴구 공무원의 공무원역 허격(구정장, 부구청장 제외)	시 의 회 사무처장 구 청 장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타 집행정기관과의 형평 고려 ○ 구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강화 및 국제화 차원에서 의 공무원역의 행정 전자 간소화	
(위임법의 확대: 1건)				
소 관 국	사 무 명	수입기관	사 유	
내 부 국	11. 공무원 일부 임용권 ○ 1개월 이내의 교육과전 경 령	5급 이상 사업소장	○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관실정을 고려한 자체추진으로 책임교육 실현	
(환수: 4건)				
소 관 국	사 무 명	수입기관	사 유	
내 부 국	11.(일부 환수) 5급 이하 지방공 무원등의 휴직·직위해지 및 복 직	5급 이상 사업소장	○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관대화 경향으로인한 사문화로 권한위임 실효성 없음.	
보 사	55.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신고의 수리	구 청 장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지방환경청 장으로 변경	
환경 국	60. 산업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82. 산업폐기물(재생, 이용용) 처 리 신고수리	구 청 장 구 청 장		

규 칙

서울특별시부정경쟁심의위원회규칙폐지규칙을이에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617호

서울특별시부정경쟁심의위원회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부정경쟁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

1.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업무처리는 중앙부처(특허청)의 각종 지침과 지침에 계보입된 전한 사항으로써 수립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부정경쟁심의위원회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동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618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항, 1급 소속관서
 - 가. 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 나. 예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 다.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2. 2, 3급 소속관서
 - 가. 예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 나.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 다. 예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3. 급역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방개발리금, 전출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경리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제12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 조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i. 내항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중합 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제21조제2항 중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 자가운전차량유지비
 6.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10. 직무수행특수활동비
- 제27조제1항 중 "출납폐쇠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
모이원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
내"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2호, 제5호, 제6호, 제9
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 5. 특수활동비
-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9. 자각운전자량유지비
- 10.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
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
비를 제외한다.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동제13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비회계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저
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경비별 지출원인행의 정리구분
표의 구분란 3. 기타경비 중 "특별관공비"
를 "업무추진비"로 한다.

부 칙

시(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시(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리관의
직무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예산과목 구조
개편에 따른 과목명칭의 정비 및 예산안
의 첨부서류에 대형공사등의 내역을 명
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불용
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로 무차효율의 극
대화를 기하며, 세출예산 이월의 조기
처리로 예산제정운영 및 결산업무처리

자경을 모호하는 등 내부부의 지방자치
단체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준칙 시달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리관의 직무 중 "일경리담당서
위임하는 사항"을 변경, 1급 소속관서
는 예정금액 3천만원 내지 1억원 미만
을 5천만원 내지 3억원 미만으로, 2·3
급 소속관서는 예정금액 1천만원 내지
5천만원 미만을 3천만원 내지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위탁금, 대형
사업비, 반환금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의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
한 서류를 추가함(안 제12조제2항).

다. 예산과목구조개편에 따라 관공비, 경
비비 등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으로 과목명칭을 정비함(안 제5조제3
호, 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라. 세출예산의 이월요구서류를 출납과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던 것을 명시이
월 및 재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
료 후 10일 이내에, 사모이원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
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마. 회계관계공무원이 비치하는 장부를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0조제3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
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2619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된 공장이 용자신청 과항유 기의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유관부서의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명과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은행 차입의 조성 및 보조) 조례 제6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구조개선 자금의 계정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조성자금의 재원에 따라 이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별도 계타 운용한다.

- 1. 구조개선자금: 정부의 신청액 100% 개 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결구지원으 로 신규 출연한 자금
- 2. 구조조정자금: 정부예탁금, 구조개선자 금 이외 서울특별시 신규 출연금, 구조개 선자금의 용자상환금·이자·기타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

제11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13 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자금 (구조개선자금 계정)의 용자조건·용자상환 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대출한도액은 조성된 자금의 규모와 신 정업채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 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 자금은 7억원(정보화사업 자금은 3억원) 을 한도로 하여, 실소요자금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 2.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6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

정자금은 연 6.75퍼센트로 한다.

- 3. 자금의 용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 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자금으로 용자되는 정보화사업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 할상환으로 한다.

②조례 제1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 복합사 업자금에 대한 용자조건·용자상환기준은 제 1항의 기준에 의한 개별 사업 기준을 복합 적 적용한다.

제12조(용자대상 선정기준 등) ①시장은 공업폐기및공장설립이완화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조건부공장등록증 을 제외한다)을 소지한 장안군제조업 및 동 보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통계청고시 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음식료품, 담배, 출판·인쇄 및 기계에제 복제업을 제외한다) 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 소기업육성에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주 원을 받아 용자대상자 및 용자한도를 결 정한다.

②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 대상업체의 용자신청 총액이 자금조성 규모 를 초과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 대상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주사무소와 등록 된 공장이 모두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추천토록 할 수 있다.

③제8조제6항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구조개선자금 계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13조(용자취급은행) 구조개선자금의 계정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용자취급은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5.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한국외환은행
- 6.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 7. 국민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4조(입부취급요령 등)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 「행정규제 완화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 문전자금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자금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계획」의 기금을 정부정책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재원에 따라 별도계좌 및 운용토록 함.

2. 주요골자

- 「문전자금계정의 기금」 융자신청 서류 간소화(제6조): 6종→2종
- 등록된 공장이 융자신청 관할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관할구에서 발급되는 증명의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유관부서의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공부등록번호를 기재·날인함으로써 같음.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계정의 기금」 구분 제리 및 운영
- 기금의 구분제리: 자금조성의 재원

에 따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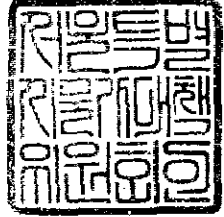
- 구조개선자금: 서울특별시의 신규출연기업
- 소기업 100일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 구조조정자금
 - 정부예탁금
 - 구조개선자금 융자상환금·이자·기타 조성자금
- 융자 및 상환조건(제11조): 대출금리, 대출한도액, 상환조건
- 구조개선자금: 연리 6%, 실소요자금 이내, 3년거치5년균분상환
- 구조조정자금: 연리 6.75%, 7억원 이내, 3년거치5년균분상환
- 또한, 상회화사업 자금은 3억원 이내, 2년거치3년균분상환
- 주사무소 및 등록원 공장이 모두 서울지역에 있는 경우 우선순위 우대(제12조제2항)
- 용자대행 금융기관을 은행법과 특별법에 의한 전 금융기관으로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정 연의도(제13조)
- 용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제14조).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1994-162호

소방설비공사업영업정지공고
 소방법 제5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5. 20		서울특별시		
상호(영업소재지)	대표자	취등록번호(면허번호)	영업정기기간	처분사유
(주)태일건설 관악구 봉천동 1655-25	이종구 조경호	소방설비공사업제2종 (전기분야)제92-152호	94. 5. 13~94. 8. 12(3월)	기술능력 미달(소방 설비기사 미소속)
(주)중원타워 서초구 서초동 1307-2	최민섭	소방설비공사업제2종 (전기분야)제92-74호	"	"
보양기술개발공업(주) 중구 순화동 6-1	박광철	소방설비공사업제2종 (전기분야)제89-2호	"	면허기준 미달(소방 설비기사실적 부족)
<p>●서울특별시공고제1994-163호 소방설비공사업영업정지공고</p> <p>소방법 제5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영입정지 처분하였기에</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p> <p>1994. 5. 20 서울특별시</p>		
상호(영업소재지)	대표자	취등록번호(면허번호)	영업정기기간	처분사유
(주)양지종합건설 마포구 망원2동 435-2	윤덕걸	소방설비공사업제1종 (기계분야)제92-17호	94. 5. 13~94. 8. 12(3월)	기술능력 미달 (소방설비기사 미소속)
신원종합건설(주) 도봉구 미아동 136-49	이근원	소방설비공사업제1·2종 (기계·전기분야)제92-122호	"	"
국도건설(주) 강남구 포이동 190-2	손용남	소방설비공사업제2종 (전기분야)제88-12-38호	"	"
태우기술(주) 서초구 서초동 1586-1	은근수	소방설비공사업제1종 (기계분야)제88-14-38호	"	"
(주)서일알렉산 강남구 논현동 103-5	현희주	소방설비공사업제2종 (전기분야)제92-180호	"	"
삼성전업 은평구 녹번동 62-6 대림상가 A-303	전강원	소방설비공사업제2종 (전기분야)제86-63-52호	"	"
<p>●서울특별시공고제1994-164호 공인패기맞심조교부공고</p> <p>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 회 청인을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물기대책위 원회 청인을 신조교부하였기 같은 조례 제</p>		<p>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p> <p>1994. 5. 20 서울특별시</p>		

구 분	제 기 청 인 내 역	신 조 교 부 정 인 내 역															
1. 청인명	서울특별시 항공요금심의위원회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인															
2. 폐기 및 신조교부 사유	위원회 폐기	위원회 신설															
3. 폐기일 및 사용기간	1994. 4. 28	1994. 5. 10															
4. 인 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165 호 1994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응자계획공고</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유성기금실치도를앞으로 제6조의 규정이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응자계획은 다음과 같이 공고함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 5. 20 서울특별시장</p> <p>1. 응자계획</p> <p>2. 응자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258 1292 1153 1574"> <thead> <tr> <th>사업유형</th> <th>지 원 대 상</th> <th>비정금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자동화사업</td> <td>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td> <td>14 억원</td> </tr> <tr> <td>② 정보화사업</td> <td>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장의 자동화, 경영관리의 전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td> <td>15 억원</td> </tr> <tr> <td>③ 개발기술 사업화사업</td> <td>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업체</td> <td>17 억원</td> </tr> <tr> <td>④ 복합사업</td> <td>①+②, ①+③, ①+②+③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td> <td>26 억원</td> </tr> </tbody> </table> <p>※ 비정자금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사업 별트 다소 조정될 수 있음.</p>			사업유형	지 원 대 상	비정금액	① 자동화사업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	14 억원	② 정보화사업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장의 자동화, 경영관리의 전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15 억원	③ 개발기술 사업화사업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업체	17 억원	④ 복합사업	①+②, ①+③, ①+②+③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26 억원
사업유형	지 원 대 상	비정금액															
① 자동화사업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	14 억원															
② 정보화사업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장의 자동화, 경영관리의 전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15 억원															
③ 개발기술 사업화사업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업체	17 억원															
④ 복합사업	①+②, ①+③, ①+②+③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26 억원															
<p>가. 자금총액: 72억원 나. 응자조건</p> <p>가) 응자한도: 업체당 7억원 이내(정보화사업은 3억원 이내) 나) 대출관리: 원 6.75% 다) 응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단, 정보화사업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라) 자금의 용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설자금</p>																	

<p>3. 선정자격</p> <p>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p> <p>가.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공산품제조업 및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 단, 조선투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음식료품, 담배,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p> <p>나. 제조업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p> <p>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개발기술사업화사업은 2년 이상)</p> <p>라.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업체</p> <p>마.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개발기술사업화사업은 2억원 이상)</p> <p>바. 외국인투자업체인 경우 내국인 자본율 50% 초과업체</p> <p>사. 최근 결산연도의 부채비율이 80% 미만인 업체</p> <p>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p> <p>4. 용자신청서 교부 및 접수</p> <p>가. 접수기간: 1994. 5. 30(월)~5. 31(화) 단,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접수마감 기한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p> <p>나. 신청서교부: 서울시 상공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p> <p>다. 신청서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p> <p>5. 용자대상업체선정 및 통보</p> <p>가. 1차: 기업의 진실도, 성장가능성, 사업타당성 등 평가 후 용자적격 여부 심사</p> <p>나. 2차: 1차심사에서 통과된 용자적격업</p>	<p>체들에 대하여 용용자규모를 감안하여 순위별로 선정</p> <p>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p> <p>6. 용자취급기관</p> <p>은행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p> <p>7. 신청구비서류</p> <p>가. 신청서(서울시 소정양식)</p> <p>나. 사업계획서</p> <p>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p> <p>라.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p> <p>마. 설계도면, 견적서, 카탈로그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p> <p>8. 기타</p> <p>가. 주사무소의 공장이 모두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우대할 수 있음.</p> <p>나. 공고사항 이외의 용자선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상공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지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서울시(상공과): 750-8351-7</p> <p>—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지부): 769-6605-9</p> <p>●서울특별시공고제1994-166호</p> <p>제2종전기공사업면허업체영업정지 처분공고</p> <p>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1994. 5. 20</p> <p>서울특별시장</p>
---	---

처분 내용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제208호	승일전전	노병조	촌평구 불광동 484-108	전기기술자 : 1인 부족	영업정지 2월 (94. 5. 16~94. 7. 15)	
<p>●서울특별시공고제1994-168호 다.</p> <p>시의회부의안전공고 1994. 5. 20</p> <p>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서울특별시 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구 분	부 의 안 전 명			주 관 부 서		
조례안 (2건)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박물관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			하수행정과 문화재과		
<p>●서울특별시공고제1994-170호</p> <p>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및지정취소공고 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의료보호법 제10조, 제24조 및 같은 법 1994. 5. 20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신로지구의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다음과 같</p>						
<p>1. 지정(143개소)</p> <p>가. 제1차 진료기관(143개소)</p>						
지 정 번호	진료기관명	소 재 지	개설자 (대표자)	진 료 과 목	전 화	지정일
1-8714	김병인치과의원	중구 남창동 31-1	김병인	치과	318-5862	1994. 5. 20
1-8715	성누가의의원	용산구 한강로2가 177-1,2,3	차경주	정형외과 의 3	790-5311	"
1-8716	박숙현소아과 의원	성동구 중곡3동 241-23	박숙현	소아, 산부인, 내과	467-6777	"
1-8717	예치과의원	성동구 둔자동 325-6	이중훈	치과	215-2875	"
1-8718	선련의원	성동구 능동 132-3	박광재	내, 외, 산부인, 소 아, 정형외, 성형 외, 이비인후과	469-5527	"
1-8719	선련치과의원	성동구 능동 132-3	임걸윤	치과	499-7072	"
1-8720	김중용내과의원	성동구 중곡동 124-55	김중용	내과	455-4038	"
1-8721	자양중앙의원	성동구 자양동 616-29	김정순	성형외, 내, 소아, 외, 비뇨기과	458-6715	"

지정 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의사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722	천한옥소아과 의원	성동구 금호동4가 1384	천한옥	소아과	298-9386	1994. 5. 20
1-8723	가담한의원	성동구 성수2가 344-5	고광학	한방各科	497-6275	"
1-8724	구원치과의원	중랑구 상동동 118-16	김정식	치과	207-4419	"
1-8725	여노라치과의원	중랑구 상동동 81-35	이학상	치과	207-3259	"
1-8726	고운치과의원	중랑구 강우동 488-13	최미혜	치과	207-4418	"
1-8727	성삼한의원	중랑구 상동동 115-13	이정아	한방各科	496-2914	"
1-8728	구세광한의원	중랑구 면목동 360-3	이호동	한방各科	207-6078	"
1-8729	이준호한의원	중랑구 면목동 632-5	이준호	한방各科	209-0708	"
1-8730	민정식소아과 의원	중랑구 강우동 458-1	민정식	소아과	203-2851	"
1-8731	강복우성의원	성북구 장위동 64-91	신석우	일반내, 외, 소아, 정형외, 재활의학, 임상병리, 진단방 사선과	942-2281	"
1-8732	장대환내과의원	성북구 장위동 238-100	장대환	내, 소아, 피부, 비 뇨기, 외과	909-2386	"
1-8733	노술성신경외과 의원	성북구 리빌록2동 27-3	노순성	신경외, 정형외, 내, 소아, 외과	911-1006	"
1-8734	성원의원	성북구 하일곡1동 76- 17	윤정용	일반내, 외, 소아, 산부인, 비뇨기, 피 부, 정형외과	943-7419	"
1-8735	정동핵미리의원	성북구 정릉4동 286-6	진영환	내, 소아, 방사선과	943-8370	"
1-8736	청수서울치과 의원	성북구 정릉4동 786-6	장은수	치과	941-3489	"
1-8737	이창훈신경과 의원	도봉구 수유1동 93-1	이창훈	일반내, 외, 신경내 과	987-2616	"
1-8738	성원의원	도봉구 수유2동 269-20	최정배	일반내, 외, 소아, 정형외, 재활의학과	999-7171	"
1-8739	연세의원	도봉구 도봉2동 30-1 한 신소평 409	한우중	일반내, 소아, 피부, 이비인후, 안과	955-1646	"
1-8740	동산의원	도봉구 수유2동 549-5	박은실	일반내, 소아과	958-7534	"
1-8741	막의원	노원구 상계2동 389- 361	배현영	일반내과 외 3		"
1-8742	강이비인후과의원	노원구 공릉2동 424-8	강진구	이비인후과		"
1-8743	이종호비뇨기과 의원	노원구 상계10동 693-2, 3	이종호	비뇨기과 외 1		"

지정 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744	백중치과의원	노원구 상계3동 91-8	김백중	구강외과 외 7		1994. 5. 20
1-8745	김재면내과의원	노원구 상계8동 651-6, 201호	김재면	내과		"
1-8746	김경수내과의원	노원구 중계2지구 4-15 블록 중계그랜드프라자	김경수	내과		"
1-8747	하상철한의원	노원구 공릉2동 238-48 상가 201호	하상철	한방各科		"
1-8748	그린치과의원	노원구 공릉동 597-17	박형우	구강외과 외 9		"
1-8749	문비뇨기과의원	노원구 월계동 50-29	문호근	비뇨기과 외 1		"
1-8750	서민치과의원	노원구 상계동 764 2- 205	김정환	구강외과 외 9		"
1-8751	인희산부인과 의원	노원구 상계동 728-1	김용현	산부인과		"
1-8752	김광수피부과 의원	노원구 중계2지구 5-13 블록 304호	김광수	피부과 외 1		"
1-8753	신재익의원	노원구 상계동 670-2 주 공9단지상가 203, 204호	김정희	소아과 외 2		"
1-8754	노원방사선과 의원	노원구 상계동 764-1 하 라스포츠 204호	김국희	진단방사선과		"
1-8755	상계진단방사선 과의원	노원구 상계동 651-7 합 동빌딩 201, 202호	박상규	진단방사선과		"
1-8756	박경숙산부인과 의원	노원구 중계1동 중계2지 구 5-13블록 201호	박경숙	산부인과		"
1-8757	강제훈치과의원	노원구 상계동 456-135	강제훈	구강외과 외 9		"
1-8758	박명제치과의원	노원구 상계동 1028-4	박명제	구강외과 외 7		"
1-8759	유소아과의원	노원구 월계4지구 주공 ②2단지 600	유경옥	소아과		"
1-8760	상아치과의원	은평구 역촌동 37-1	이정제	치과	355-2101	"
1-8761	세란소아과의원	은평구 갈현동 410-5	김문아	소아, 내, 이비인후 과	385-4760	"
1-8762	한국방사선과 의원	은평구 응암동 15-5	임진숙	방사선과	386-3861	"
1-8763	대영치과의원	서대문구 홍제 33 무악 정구②상가 201호	김대영	치과	395-2874	"

지정 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764	연세가정의학과 의원	서대문구 홍제동 28-6 자중	김철수	가정의학, 내, 소 아, 부인과	723-8745	1994. 5. 20
1-8765	영광치과의원	마포구 용강동 494-57	한승환	치과	719-2058	"
1-8766	서울의원	마포구 도화2동 201-35	김용비	정신, 내과	718-7575	"
1-8767	방원치과의원	마포구 망원2동 435-42	김 옥	치과	336-2292	"
1-8768	신홍산부인과 의원	마포구 신공덕동 25-9	홍석우	산부인과	712-1331	"
1-8769	주정주한의원	마포구 도화1동 181-29	주정주	한방各科	718-7533	"
1-8770	김성곤비뇨기과 의원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지구내 상업용지1블록 1- 7	김성곤	피부, 비뇨기과	659-7447	"
1-8771	홍이비인후과 의원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3-1블록 경동 대림상가 207호	홍민기	소아, 이비인후과	659-2437	"
1-8772	이전태소아과 의원	강서구 방화동 택지개발 지구 2-1블록 2-1단지상 가 306호	이전태	내, 소아과	661-7457	"
1-8773	박재완소아과 의원	강서구 방화동 450-7	박재완	소아, 내, 이비인후 과	686-9476	"
1-8774	새서울가정의학 과의원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지구 9-2 상가 301	오진석	내, 소아, 외, 이비 인후, 가정의학과	659-2458	"
1-8775	영동산부인과 의원	강서구 화곡동 372-18	김영미	산부인과	693-3436	"
1-8776	윤내과의원	강서구 방화동 562-21	윤돈영	내, 소아과	661-6781	"
1-8777	고은이치과의원	강서구 방화 2-2 택지개 발지구도시개발④ 상가 304호	이명희	치과	661-5345	"
1-8778	동서한의원	강서구 내발산동 723	정성숙	한방各科	698-0988	"
1-8779	김애란소아과 의원	강서구 화곡동 837-10	김애란	내, 소아과	654-3566	"
1-8780	고운치과의원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9-2 상가 301 호	김경원	치과	659-5039	"
1-8781	기독교의원	강서구 화곡동 377-7	이형백	내, 외, 소아, 피부 비뇨기과	603-1012	"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782	구의원	강서구 방화동 택지개발지구 7블록 동성동상가 2-202호	구현정	내, 소아과	662-9978	1994. 5. 20
1-8783	지혜안피부과 의원	구로구 오류1동 44-10	지혜란	피부과	617-1030	"
1-8784	구로의원	구로구 구로4동 731-6	임상현	가정의학과	856-0664	"
1-8785	현대지정의원	구로구 오류1동 23-36	이선용	내, 외, 소아, 산부인과	611-4233	"
1-8786	고려내과의원	구로구 구로2동 339-64	위경소	내과(무척전문)	855-2047	"
1-8787	이치과의원	구로구 독산2동 378-470	이 승	치과	803-1800	"
1-8788	이준호내과의원	구로구 개봉1동 126-30	이준호	내과, 소아과	613-9600	"
1-8789	신성의원	구로구 시흥본동 903-1	신봉호	내, 정형, 성형, 신장외, 임상병리방사선, 재활의학, 비뇨기과	808-6611	"
1-8790	우성한의원	구로구 구로6동 120	윤동학	한방各科	857-0395	"
1-8791	정신경정신과의원	구로구 시흥본동 852-34	정경희	신경정신과	894-7875	"
1-8792	삼부대성의원	구로구 독산동 297-11	박순용	내, 외, 소아, 피부, 미용, 임상병리, X선과	856-9345	"
1-8793	구로내과의원	구로구 구로동 83-3	양철관	내과	851-4587	"
1-8794	강의원	구로구 독산동 809-28	강정희	소아, 내, 외과	805-4555	"
1-8795	유전목내과의원	구로구 시흥동 870	유전목	내, 소아, 임상병리, 피부비뇨기과	893-5211	"
1-8796	이형철치과의원	구로구 구로6동 136-40	이형철	치과	855-2833	"
1-8797	본초당한의원	구로구 개봉2동 403-229	이병주	한방各科	618-1334	"
1-8798	백밍한의원	구로구 개봉2동 203-12	전걸환	한방各科	619-9386	"
1-8799	안국한의원	영등포구 대림3동 665-9	손병수	한방各科	834-8500	"
1-8800	보생한의원	영등포구 대림3동 990-1	이남훈	한방各科	848-8554	"
1-8801	반이비인후과의원	영등포구 선길7동 832	민원식	이비인후과	842-5650	"
1-8802	영등포의원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	윤영순	일반과	671-6080	"
1-8803	안재희치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6	안재희	치과	678-5737	"
1-8804	송원석치과의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송원석	치과	786-4121	"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805	연세이비인후과 의원	관악구 봉천10동 464-8 (3층 5호)	정광현	이비인후과	873-5600	1994. 5. 20
1-8806	이정희소아과 의원	관악구 봉천본동 941- 20	이정희	소아과	877-3571	"
1-8807	사명회치과의원	관악구 신림5동 1422- 42	사명회	치과	882-6890	"
1-8808	신동진내과의원	관악구 봉천본동 941-1	신동진	내, 외, 소아, 임상병 리, 방사선, 피부과	875-3428	"
1-8809	박지양산부인과	관악구 신림2동 96-48	박지양	산부인과	882-6030	"
1-8810	성모가정의학과 의원	관악구 신림6동 1526-6	박강호	이비인후, 소아, 과 부, 비뇨기, 산부 인, 내과	889-3553	"
1-8811	이종인성형외과 의원	관악구 신림본동 75-43	이종인	성형외과		"
1-8812	황영호성형외과 의원	관악구 신림5동 1433- 44	황영호	성형외과		"
1-8813	연세비뇨기과 의원	관악구 신림11동 1569-1	김철민	피부, 비뇨기과	867-6585	"
1-8814	구명희의원	관악구 봉천7동 1661-1	구명희	외, 소경외과	886-0606	"
1-8815	박시환의원	관악구 봉천3동 100 외 6필지 현대상가 1동 4층 4호	박철수	한방各科	878-7727	"
1-8816	이근형치과의원	관악구 봉천11동 1634-9	이근형	치과	888-7522	"
1-8817	일양한의원	서초구 서초동 1600-9 우성빌딩오피스텔 101호	김민희	한방各科	582-6534	"
1-8818	이화피부과의원	서초구 반포동 52-8	이거홍	피부과	534-8275	"
1-8819	설악한의원	서초구 잠원동 50-2	김원탁	한방各科	593-0010	"
1-8820	동원한의원	서초구 양재동 125-1	조성각	한방各科	576-5507	"
1-8821	은혜한의원	서초구 서초동 1356-7	방세균	한방各科	563-1130	"
1-8822	백남중내과의원	강남구 논현동 164-1	백남중	일반 내과	542-4114	"
1-8823	심형보성형외과 의원	강남구 대치동 1021-6	심형보	성형외과		"
1-8824	정시욱신경정신 과의원	강남구 논현동 241-3	정시욱	신경정신과	518-8830	"
1-8825	대치방사선과 의원	강남구 대치동 1022 6층	안경수	진단방사선과	539-9939	"

지정 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826	새서울치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598-2	조봉성	치과	543-9933	1994. 5. 20
1-8827	대림의원	강남구 대치동 897-28	이병복	가정의학과		"
1-8828	심은치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517-27	송언재	치과	547-1875	"
1-8829	신형치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630-31 영부빌딩 3층	이대성	치과	518-3126	"
1-8830	박지과의원	강남구 역삼동 642-6 성 지하이츠 3-305	박은희	치과	561-4959	"
1-8831	엘에이치과의원	강남구 역삼동 823-22 한양빌딩 301호	이준기	치과	557-2875	"
1-8832	강남애덴치과 의원	강남구 대치동 944-11	이철규	치과	555-0326	"
1-8833	과치바의원	강남구 일원동 311-2	카노진	치과	571-7640	"
1-8834	남서울의원	강남구 포이동 239-10	이충석		577-0654	"
1-8835	이영진성형외과 의원	강남구 도곡동 952-10	이영진		501-5858	"
1-8836	재단법인한국의학 연구소강남의원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 빌딩 19층	박은숙			"
1-8837	르본의원	강남구 신사동 580-1	백경아		543-3313	"
1-8838	장충현성형외과 의원	강남구 대치동 507-1 풍 림빌딩 404호	장충현		556-2816	"
1-8839	중앙의원	강남구 압구정동 211-1 현대A상가	조선구		542-4231	"
1-8840	최수병피부과 의원	강남구 역삼동 696-43	최수병		501-6885	"
1-8841	호산피부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617-5	이미경		546-4281	"
1-8842	김동현정신과 의원	강남구 신사동 618-2	김동현		545-3203	"
1-8843	장수환의원	강남구 일원동 644-4 2층	윤성중	한방各科	574-6230	"
1-8844	성제환의원	강남구 대치동 626 청실 상가 202	이종태	한방各科		"
1-8845	불로한의원	강남구 삼성동 154-13	이기원	한방各科	508-0280	"
1-8846	강남한의원	강남구 대치동 989-2 206호	손예건	한방各科	539-0086	"
1-8847	홍현상내과 정신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501-1, 5	홍현상	일반내, 신경, 소아 과		"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료과목	전화	지정일
1-8848	소피아의원	강남구 역삼동 601-18	김 용	정형외, 성형외, 일반내과	501-7400	1994. 5. 20
1-8849	고병천성형외과 의원	강남구 청담동 78-9, 10 요산빌딩 3층	고병천	성형외과	512-5595	"
1-8850	영동방사선과	강남구 역삼동 648-26 홍용빌딩 3층	이 통	방사선과	501-0346	"
1-8851	정담진단방사선과의원	강남구 청담동 49-5	조병제		511-6400	"
1-8852	준비뇨기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563-15	정정만			"
1-8853	지려의원	강남구 논현동 158	이봉숙			"
1-8854	오앤오의원	강남구 역삼동 681	김미경		508-0832	"
1-8855	녹십자의원	송파구 마천동 308-35	고기훈	내, 외, 소아, 피부, 비뇨기, 정형외과	403-2338	"
1-8856	고덕중앙의원	강동구 고덕동 210-3	이순기	내, 외, 소아, 피부, 비뇨기과	429-1106	"

2. 지정취소(78개소)

가. 제1차 진료기관(78개소)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취소사유	비고
1-2059	현대치과의원	중구 을지로5가 274-4	김영호	폐업	
1-2567	삼아의원	중구 영동2가 52-18	박정순	폐업	
1-3287	강이비인후과의원	중구 남대문로3가 30-1	강신구	폐업	
1-3701	시민치과의원	중구 외주로1가 1-4	결동우	폐업	
1-8460	현대의원	용산구 이태원 171-26, 29	윤동진	폐업	
1-8165	김현치과의원	성동구 중곡동 169-21	김현자	폐업	
1-975	동성의원	성동구 중곡동 230-14	임경순	폐업	
1-1120	금호정형외과의원	성동구 금호1가 1804-1	양운경	폐업	
1-427	안창로신경정신과	성동구 화양동 18-2	안창호	폐업	
1-1432	광성의원	성동구 군자동 49-24	이홍덕	폐업	
1-1543	세일의원	성동구 금호4가 567	이종규	폐업	
1-1768	박산정정신과의원	성동구 도선동 253-12	박유문	폐업	
1-1775	권비뇨기과	성동구 자양동 219-2	권철민	폐업	
1-1776	김의원	성동구 광장동 330-3	김은덕	폐업	
1-3002	일신의원	성동구 성수2가 8-3	김중호	폐업	
1-3638	이성환방사선과의원	성동구 화양동 116-2	이성룡	폐업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취소사유	비고
1-3639	서울산부인과 의원	성동구 화양동 116-2 백산빌딩 3층	전병관	폐업	
1-4385	녹십자 의원	성동구 구의동 589-9	김의열	폐업	
1-5401	성동 의원	성동구 능동 132-3	박해원	폐업	
1-5408	양윤모내과	성동구 중곡동 93-4	양윤모	폐업	
1-5877	세인소아과	성동구 자양동 581-1	박성신	폐업	
1-7188	일산산부인과	성동구 금호1가 520	강중수	폐업	
1-7811	새성동 의원	성동구 능동 132-3	김강건	폐업	
1-7902	평화 의원	성동구 성수1가 656-417	주종관	폐업	
1-8034	고운 의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14	김희연	폐업	
1-8366	자양중앙 의원	성동구 자양동 616-29	김병태	폐업	
1-1840	연세치과	성동구 마장동 522-3	전재룡	폐업	
1-3000	이상훈치과	성동구 자양동 662-15	이상훈	폐업	
1-4410	백치과	성동구 화양동 47-1	백운기	폐업	
1-5778	한양치과	성동구 평당동 246-2	이승근	폐업	
1-5799	동신치과	성동구 송정동 61-19	심영섭	폐업	
1-5809	정문기치과	성동구 성수2가 36-401	정문기	폐업	
1-5834	김영철치과	성동구 자양동 553-167	김영철	폐업	
1-6869	박종근한의원	성동구 금호1가동 546	박종근	폐업	
1-6891	실로암한의원	성동구 군자동 1-6	신우현	폐업	
1-6899	수성한의원	성동구 중곡동 124-5	김영원	폐업	
1-6996	최민선한의원	성동구 금호4가동 559	최민섭	폐업	
1-8366	자양중앙 의원	성동구 자양동 616-29	김정순	폐업	
1-5862	김면호내과	성동구 금호2가 326-1	김면호	폐업	
1-5842	백상치과	성동구 능동 222-4	김홍모	폐업	
1-3295	전용덕치과 의원	노원구 상계10동 570-1 임광(삼)상가 304	전용덕	폐업	
1-1786	박가정의학과 의원	노원구 상계2동 389-680	박승희	폐업	
1-3415	문소아과 의원	노원구 상계9택지개발 4-20, 21, 305	문형조	폐업	
1-2744	김경자안과 의원	노원구 공릉2동 238-48	김경자	폐업	
1-6983	해성한의원	노원구 상계5동 169-509	강대인	폐업	
1-8659	월계중앙 의원	노원구 월계동 633-90	김시련	폐업	
1-8390	천성한의원	노원구 상계동 730-302	지규용	폐업	
1-3298	제일소아과 의원	노원구 상계동 670 상계9단지상가 203	정성기	폐업	
1-7762	상계한의원	노원구 중계동 142-34	유희복	폐업	
1-6100	명진치과 의원	노원구 상계5동 639-1 보람상가 312	신중용	폐업	

지정번호	진료기관명	소 재 지	개설자 (대표자)	취소사유	비고	
1-665	최홍열외과의원	은평구 불광동 274-11	최홍열	폐업		
1-5693	한양산부인과의원	은평구 갈현동 456-31	한규환	폐업		
1-125	삼아의원	마포구 합정동 109-1	진제신	폐업		
1-342	조연수의원	강서구 화곡동 799-10	조연수	폐업		
1-5206	유광사산부인과의원	강서구 화곡동 1052-6	유광사	폐업		
1-5611	세란소아과의원	구로구 개봉동 403-107	김문아	폐업		
1-1321	홍정형외과의원	구로구 시흥본동 903-1	홍영권	폐업		
1-5610	한강의원	구로구 시흥1동 994-3	구명희	폐업		
1-1902	이순석의원	구로구 시흥1동 789	이순석	폐업		
1-952	구로의원	구로구 구로동 731-6	박계열	폐업		
1-4067	김치과의원	구로구 독산동 378-470	김성형	폐업		
1-3909	김비뇨기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2-1	김명호	폐업		
1-3952	우신치과의원	영등포구 신길3동 233-50	최재기	폐업		
1-3980	홍영만치과의원	영등포구 양평동 1-247	홍영만	폐업		
1-3981	박성규치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6	박성규	폐업		
1-6500	대홍한의원	영등포구 신길3동 257-43	정동권	폐업		
1-1002	김서행의원	영등포구 신길동 232-16	김서행	폐업		
1-1055	임피부과의원	영등포구 신길동 2663		폐업		
1-2810	나승훈이비인후과의원	관악구 봉천10동 464-8	나승훈	폐업		
1-7847	오복초과의원	관악구 방천본동 958-12	김선희	폐업		
1-2807	녹성과의원	관악구 신흥8동 1655-17	이승기	폐업		
1-2813	문비뇨기과의원	관악구 신흥11동 1568-1	문문성	폐업		
1-3224	서일의원	서초구 서초동 1317-3	신우철	폐업		
1-2701	이성복치과의원	강남구 압구정동 224-1 현대백화점내	이성복	폐업		
1-2696	민치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624-13	민병진	폐업		
1-7858	경동한의원	강남구 수서동 255 수서6단지상가 304	소경순	폐업		
1-8435	김제원한의원	강남구 역삼동 702-28	김제원	폐업		
1-4860	진치과의원	강동구 성내동 440-23 대우빌딩 4층	김미영	폐업		
3. 변경(48개소)						
가. 제1차 진료기관(48개소)						
지정번호	구분	진료기관명	소 재 지	개설자 (대표자)	전 화	비 고
1-6547	변경전	동선당한의원	중구 을지로6가 18-44	김대성		
	변경후	"	"	이정우		

자 정 번호	구 분	진료기관명	소 재 지	개설자 (대표자)	전 화	비 고
1-7888	변경전	동화한의원	중구 황학동 709	신호철		
	변경후	"	중구 황학동 707-2	김규일		
1-2571	변경전	고병원성형외과의원	중구·영동2가 2-2	고병천		
	변경후	원기정의원	"	원기정		
1-8355	변경전	삼파당한의원	중구 황학동 1013	이영구		
	변경후	"	"	전창민		
1-2575	변경전	오인성형외과의원	중구 충무로2가 66-7	함기선		
	변경후	오인의원	"	차상훈		
1-4930	변경전	최치과의원	용산구 보광동 216-56	최 황		
	변경후	"	용산구 보광동 260-16	"		
1-2996	변경전	용강의원	용산구 보광동 217-24	김무관		
	변경후	"	용산구 보광동 216-56	"		
1-7814	변경전	대한분임시술원하 부속모자보건의원	성동구 중곡3동 166-19	김적수		
	변경후	"	"	이보옥		
1-5867	변경전	성동성심의원	성동구 능동 95-2	남범우		
	변경후	"	"	박동구	469-8001	
1-7903	변경전	중앙의원	성동구 심수2가 302-36	김지문		
	변경후	"	"	김용일	463-1545	
1-5820	변경전	광장치과	성동구 광장동 330-8	조영호		
	변경후	"	성동구 광장동 333	"		
1-5845	변경전	삼오치과	성동구 중곡2동 39-2	김명자		
	변경후	한승치과	성동구 중곡동 165-1	"		
1-6599	변경전	국도한의원	성동구 금호4가 604	노상복		
	변경후	"	성동구 금호4가 596	"		
1-6871	변경전	민생한의원	성동구 금호1가 180-63	권혁수		
	변경후	"	성동구 금호1가 125-1	"		
1-6857	변경전	박중한의원	성동구 도선동 257	김홍일		
	변경후	무학한의원	성동구 행당동 320-18	"		
1-5826	변경전	해민치과	성동구 자양1동 219-2	정인영		
	변경후	"	성동구 자양동 216-21	"		
1-1849	변경전	민성외과	성동구 옥수1동 521-2	김광배		
	변경후	민성의원	"	"		
1-3009	변경전	동부성심의원	중랑구 상봉2동 126-28	박매천		
	변경후	"	"	임근하	496-6619	

지정 번호	구분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전화	비고
1-356	변경전	박용국신경정신과 의원	중랑구 면목3동 605-24	박 용	434-3954	진료과목 변경: 신 경정신과 →신경외 과
	변경후	박용신경외과의원	중랑구 상봉2동 128-33	"	433-0881	
1-8626	변경전	중앙의원	도봉구 미아6동 1346-1	정 변		
	변경후	"	"	나삼옥	945-6503	
1-242	변경전	도봉의원	도봉구 도봉2동 94-15	구자훈		
	변경후	"	도봉구 도봉2동 624-87	양동양	956-2463	
1-1158	변경전	삼정의원	도봉구 마야동 779-9	정해홍		
	변경후	정산부인과의원	도봉구 마야1동 703-33, 109	"	988-3650	
1-1027	변경전	김안과의원	노원구 상계10동 693-2.3 303 호	김영택		
	변경후	"	노원구 상계10동 603-13	"		
1-1164	변경전	김병준치과의원	노원구 상계동 개발사업지구내 3-17	김병준	932-1954	
	변경후	"	노원구 중계1동 중계2지구 5- 13블록 403호	"		
1-2333	변경전	술치과의원	은평구 을암동 402-5	최복설		
	변경후	"	"	김학전	306-1990	
1-1615	변경전	이인국이비인후과 의원	구로구 가리봉동 135-10	이인국		
	변경후	이이비인후과의원	구로구 개봉1동 156-5	"		
1-4173	변경전	구로방사선과의원	구로구 개봉동 353-27	배광수		
	변경후	"	구로구 개봉동 153-5	"		
1-7078	변경전	인제환의원	구로구 개봉1동 154-115	강동철		
	변경후	"	구로구 개봉1동 156-5	"		
1-1753	변경전	석치과의원	구로구 독산동 809-28 한신코 아상가 3020호	진 석		
	변경후	"	구로구 독산동 809-28 한신코 아상가 2011호	"		
1-4085	변경전	박종규치과의원	구로구 가리봉동 44-1	박종규		
	변경후	"	구로구 구로5동 106-4	"		
1-8670	변경전	연세이비인후과의원	구로구 시흥1동 994-7	김인철		
	변경후	"	"	배광식		

지정 번호	구분	진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대표자)	진화	비고
1-171	변경전	오승환신경정신과 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67-1	오승환		
	변경후	"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21-10	"		
1-173	변경전	채민피부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80	장순상		
	변경후	"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6	"		
1-175	변경전	곽산부인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77-3	곽중원		
	변경후	"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9-20	"		
1-176	변경전	박소아과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7	박명호		
	변경후	"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72	"		
1-180	변경전	한성의원	영등포구 당산동3가 51	임천수		
	변경후	"	영등포구 당산동1가 284-1	"		
1-337	변경전	이상구신경정신과 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8	이상구		
	변경후	이상구신경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62	"		
1-806	변경전	신길성신의원	영등포구 신길6동 3508	박한구		
	변경후	"	영등포구 신길6동 3503	"		
1-866	변경전	김연수내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3	김연수		
	변경후	"	영등포구 당산동1가 14-3	"		
1-953	변경전	성락외과의원	영등포구 신길동 347-47	김형태		
	변경후	"	영등포구 신길동 342-324	"		
1-1000	변경전	창신의원	영등포구 도림동 187-11	송안덕		
	변경후	"	영등포구 도림동 187-42	"		
1-1190	변경전	오내과의원	영등포구 신길동 256-13	오덕환		
	변경후	"	영등포구 신길동 232-42	"		
1-3902	변경전	백내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1	백종열		
	변경후	백종열내과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7-2	"		
1-1371	변경전	김병길치과의원	관악구 신림본동 77-15	김병길		
	변경후	"	관악구 신림본동 1641-2	"		
1-5219	변경전	봉천명소아과의원	관악구 봉천5동 495-1	이영숙		
	변경후	명소아과의원	"	"		
1-2643	변경전	한국신경정신과의원	서초구 방배동 908-12	권영택		
	변경후	"	"	장배연		
1-7856	변경전	정인석마취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563-15	정인석		
	변경후	"	강남구 대치동 507-1	"		
1-8711	변경전	송파성심의원	송파구 삼전동 111-3	김해영		
	변경후	"	"	강희성		

예 규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㉔

●서울특별시에규제587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구조조정법"이라 한다),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이하 "구조조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구조조정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 중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아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자동화사업
2. 정보화사업
3. 개발기술사업화사업
4. 복합사업(제1호 및 제2호 사업 동시추진, 제1호 및 제3호 사업 동시추진,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사업 동시추진)

②복합사업의 추진은 개별사업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의 설계, 제작, 개척, 도입을 통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사의 공장자동화, 경영관리의 전산화, 유통관리의 자동화 및 전산망을 구성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개발기술사업화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공산품제조업전업률"이라 함은 최근 결산연도 총매출액 중에서 공산품제조업에 의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 "중소기업 외의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경제협력기구 및 외자도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재무제표"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조원가명세서를 말한다. 단, 관할세무서장이 재무제표의 확인이 불가능한 서가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상호여정 재무제표(부가가치공급가액중 명원 및 신청업체 대표자 각서 제출포함)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추후에 정구하여야 한다.

9. "가동기간"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승인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은 동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및 품목분류를 말한다.

11. "부채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준비금은 자기자본으로 본다.

12. "상시종업원수"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할당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13. "추가지원"이라 함은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년초 융자지원 공고 이후 당해년도내 추가로 융자지원계획이 의하여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14. "정보처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응용관련업 중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

처리 및 컴퓨터응용관련업을 말한다.

제4조(신청자격) 구조조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관할 지역 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업비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공장이 수개인 경우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공장의 등록증을 말하며, 조건부공장등록증을 제외한다)을 소지한 공산품제조업 및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담배,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
2.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공산품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자
3. 신청일 현재 1년 이상(개발기술사업화 사업은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자(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전환 전의 가동기간을 포함함)
4. 외국인투자업체의 경우 내국인의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자
5.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당거래처로 규제중이 아닌 자
6. 제3조제6호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자가 아닌 자
7. 휴·폐업 중이 아닌 자
8. 최근 결산년도의 부채비율이 800% 이상이 아닌 자
9. 취소된 사업과 동일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제5조(승인신청 등) 제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구조조정사업계획의 승인 및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승인신청업체"라 한다)는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지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서에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4.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할 경우에는 물품매도확약서)
5. 설계도면 또는 카탈로그
6. 기타 평가 및 자금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승인기준) ①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소정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용자 대상기업·용자 규모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승인신청접수, 사업타당성평가, 용사대상기업·용자 규모 심의업무 등을 구조조정사업 지원과 관련한 유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검토 및 평가기준과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기간 등) ①시장은 자금지원신청에 대하여 년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하거나 가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

한 업체에 대한 처리기한의 기산일은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일이 속한 주의 토요일로 하며, 가접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보류하며 처리기한은 추가지원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승인기한 및 승인통보) ①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40일(개발기술사업화 및 개발기술사업화가 포함된 동시 추진사업은 50일) 이내에 승인 및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신청업체, 자금관리은행, 대출취급은행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승인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한은 수정·보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자금지원 제외대상)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업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경고에서 정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자(경고에서 정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금지원 통보를 유보한다.

제10조(자금사정기준) ①시장이 승인신청업체의 용자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소요자금 사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1. 국산시설: 부가치세를 제외한 시설 구입가격(자체제작시설은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구입비)</p> <p>2. 외국산시설: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류상 CIF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서류상의 표시가격. 단, 국내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p> <p>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평가업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 이외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자율시와 협의를 거쳐도록 한다.</p> <p>제11조(지원금액의 결정) 승인신청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금액에 규격에서 정한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외국산시설에 대한 환율은 사업당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p> <p>제12조(대출기한) ①자금지원결정통보(이하 "지원통보"라 한다)를 받은 업체는 지원통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지원통보한 날로부터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수입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S/W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자금지원 결</p>	<p>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지원대상시설의 변경) ①시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체(이하 "승인업체"라 한다)가 제26조제3항제4호에 의거 지원통보한 지원대상 시설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통보한 금액범위 내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승인할 수 있다.</p> <p>②대출취급은행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결정통보한 업체의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 지원통보한 금액범위 내에서 시설의 수량, 규격, 소요금액 및 제작업체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취급은행은 조치와 동시 자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기타지원) ①시장은 승인업체에 대하여 후관기관과 연계하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 및 기술지도 2. 연수 및 정보제공 3. 해외기술협력 및 해외진출알선 4.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지원 5. 기타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 <p>②시장은 승인업체가 사후관리기간내 지도·연수업무를 행하는 유관기관에 제1항에서 정한 지도 및 연수신청을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장 사업별 승인 및 지원</p> <p>제1절 자동차사업</p> <p>제15조(신청대상) 자동차사업의 승인신청 업체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자 2. 최근 결산년도 자산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

제16조(지원자금의 대상) 자동화사업의 지원자금의 대상은 자동화계획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구입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계장치·부품 및 가제구입비로 하며 기존시설의 부품교체비용은 제외한다.

제2절 정보화사업

제17조(신청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계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 기업체는 정보화사업계획 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지원자금의 대상)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자금의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정보화계획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컴퓨터시스템 구입비
2.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구입비(부대시설을 포함함)
3. 소프트웨어구입비

제3절 개발기술 사업화사업

제19조(신청대상) 개발기술사업화사업 승인신청업체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자
2. 최근 결산년도 자산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제20조(지원대상사업) 개발기술사업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 국민투자기금(공회 기술개발부분에 한함)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2.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하여 개발이 완료된 품목의 사업화

3. 중소기업이 소유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통상실시권은 제외)의 사업화

4. 외국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품목의 사업화

5. 중견연구기반사업, 광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의 사업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지원대상 이외의 품목으로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기계류·부품 및 소재 개발대상품목으로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목의 사업화

7.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수요업체 또는 타기업과 공동개발된 기술

9. 기타 신청기업 자체적으로 개발된 신기술

제21조(지원자금의 대상) 개발기술사업화사업의 지원자금의 대상은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구입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계장치·부품 및 가제구입비로 한다.

제22조(장부비차)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자는 시설자금 사용명세서와 사업화품목의 생산 및 매출실적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23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대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로부터 3년 까지로 한다.

제24조(실역서 제출 등) ①시장은 승인업체가 계획시설을 설치완료한 때에는 구조조정사업 시설설치확보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회계연도 경과 후 4월 이내 사업별 소정의

실적서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실적서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평촉구, 시정요구,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㉒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 명령
2. 유관기관의 지도·연수의 참가 및 정보 취득회원가입 권유

제25조(성과분석)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서 또는 사업계획이행여부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시장은 승인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변경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장등록증 사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㉓시장은 승인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변경승인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주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의 변경(단,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조치한 사항은 제외)
5. 용자취급은행의 변경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시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신구대비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공장등록증 사본
6. 변경증빙서류
7.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승인업체에 대하여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촉구,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업무 위탁) ①시장은 사후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완료 및 사업실적보고의 수리와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분석,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및 승인신청에 대한 수리·승인 등 사후관리업무불 구조조정사업지원과 관련한 유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기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및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승인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사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계획의 승인취소) 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세무서장 확인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행촉구·시정요구 또는 경고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자
4. 휴·폐업증인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자
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승인 및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시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업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과 이 지침에 의하여 자금관리, 용자대상기업추천 및 사후관리업무 등을 구조조정사업지원과 관련한 유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조례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보고사항 이외에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상공자원부고사 제1993-43호(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 93년 11월 1일)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공장등록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우선등록처분 신청에 의하여 정상등록공장으로 분류되어 등록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고 시

●마포구고시제1994-1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

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

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5. 20
마포구청장

1. 사업명: 신동 재건축조합 외 2개조합 및 삼익
2. 공동사업주체: 마포구 신수동 93-19 외 1 신동 재건축조합 외 2개조합 대표 이영희 외 3인
강남구 역삼동 646-18 (주)삼익주택 대표 김상준
3. 사업위치: 마포구 신수동 93-51 일대
4. 대지면적: 10,451.58㎡
5. 사업규모: 아파트 지하3층 지상 12~24층, 4동 391세대,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연면적-47,624.76㎡

6. 사업시행기간: 1994. 5~1997. 9

●양천구고시제1994-2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변경승인

1. 양천구고시 제31호(1990. 12. 21)로 결정 및 양천구고시 제42호(1992. 12. 17) 지적승인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토지 지적 분할 결과 면적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5. 20
양천구청장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변경 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용지	양천구 목동 191-1 일대	7,566.5㎡	동화국민학교
변경	상동	양천구 목동 191-1 외 19필지	7,561.00㎡	(감 5.5㎡)

●구로구고시제1994-21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다음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말소 처분하였기 주택

1994. 5. 20
구로구청장

○고시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근거법령
87-15-2	대협건설(주)	이도상	구로구 독산1동 145-8	94. 5. 10	소재지 무단이전 및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강남구고시제1994-2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강남구 도곡동 161 외 26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4. 5. 20
강남구청장

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가.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삼성생명보험(주) 다. 사업시행위치: 강남구 도곡동 161 외 26필지 일대 라. 대지면적: 14,442㎡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 231세대 바. 건축연면적: 22,031.28㎡ 사. 변경사항: 사업기간 연장
--	---

구 분	당 초	변 경 후
사업기간	1989. 12. ~1994. 5. 5	1989. 12. ~1995. 5. 5

- 2. 도면: 생 략
- 3. 기타: 생 략

●성북구고시제1994-37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호(1973 I. 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지적승인된 "상월곡동 24 주변 도로개설공사(접속구간)"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1994-74호(1994. 4. 25)로 공람공고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6)와 건설관리과(920-3400)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다. 1994. 5. 20
성북구청장
- 가. 사업의 명칭: 상월곡동 24 주변 도로개설공사(접속구간)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 시행지: 상월곡동 26-42
 - 라. 사업의 규모: 폭 10m, 연장 14m
 - 마. 사업 시행자: 성북구청장
 - 바.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 인가일~1994. 12. 3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따로 불임.
 -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따로 불임.
- 첨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삼선5가 411

의뢰부서: 성북구청 토목과

사업의 종류: 상월곡동 24주변 도로개설공사(접속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상월곡동 26-42	철도용지	96	김준기	상월곡동 26-3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내용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명: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삼선5가 411

의뢰부서: 성북구청 토목과

사업의 종류: 상월곡동 24주변 도로개설공사(접속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월곡동 26-42	담 장 철대문	시멘블록 철 재	1식		김준기	상월곡동 26-3				

●성북구고시제1994-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지적승인
내용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
10. 31)로 재결정 고시되어 성북구고시 제
1992-24호(1992. 4. 17)로 지적고시된 관
내 하월곡동 90-120-하월곡동 74-1간 도
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내용에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정하고 도시계
획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4. 5. 20

성 북 구 청 장

가. 관보 제11661호(1990. 10. 31)로 고
시한 내용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결정 및 지적
승인 정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중 점	비 고
결정	소로	3	—	8	300	하월곡동 90-120	하월곡동 44-1	폭, 종점 내용
정정	"	"	—	6	"	"	하월곡동 74-1	정정고시

다. 도면: 변경 없음.

구 공 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5. 20

양 천 구 청 장

●양천구공고제1994-5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C양도양수인가 내역

양 도 인 가 일 1994년 5월 9일

업종 및 면허번호	설비공사업 92-서울-12-259	
구분	양도인	양수인
상호	전창공영	(주)금호엔지니어링
대표자	김학수	오동권
영업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23-1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0
도급한도액	349,759,000원	1,000,000,000원

●동작구공고제1994-6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5. 20
동작구청장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4. 5	상하수도공사업 서울: 78-13-108	청우환경 개발(주)	동작구 노량진 2동 24-16	문정원 정수환	(주) 동작구 노량진 범양환경 프렌트	2동 24-16	정수환
	설비공사업 서울: 83-12-442	"	"	"	"	"	"
	철콘공사업 서울: 78-10-110	"	"	"	"	"	"

●동작구공고제1994-7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5. 20
동작구청장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4. 5	포장유지공사업 서울: 92-16-60	(주) 동작구 대전사	상도1 동 638-1	류성근	(주) 은평구 기환건설	갈현동 463-3	나기복
	상수도공사업 서울: 92-13-158	"	"	"	"	"	"

●용산구공고제1994-87호
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건설업 양도인가하였기 같은 범 시

행령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합니다.
 1994. 5. 20
 용 산 구 청 장

인가일자	업 종 및 면 허 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94. 5. 9	설비공사업 서울 92-12-301	삼현기술 산업(주)	박진희	용산구 한강로 2가 342	대정건설 (주)	이명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4

●중구공고제1994-9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기 공고합니
 다.
 1994. 5. 20
 중 구 청 장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내역

업종및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인가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철콘92서울 10-513	신명진영 (주)	김태경	중구 을지로5 가 274-15	부일애이 엘씨(주)	이은수	서초구 서초동 1596-1	94.5.11

●송파구공고제1994-9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
 업 양도인가하고 같은 범 시행령 제19조제
 6항 및 같은 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5. 20
 송 파 구 청 장

●송파구공고제1994-9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
 업 양도인가하고, 같은 범 시행령 제19조제
 6항 및 같은 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5. 20
 송 파 구 청 장

1. 양도인가 연월일: 1994. 5. 11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토공사업(면허번호 82-02-413)
 3. 양도자·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가. 양도자: (주)동향건설 대표 김은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1-14
 나. 양수자: (주)상국건설 대표 이종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

1. 양도인가 연월일: 1994. 5. 11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의장공사업(면허번호 92-서울-01-92)
 3. 양도자·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성명
 가. 양도자: (주)시스코 대표 윤희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5
 나. 양수자: 경심건설(주) 대표 김창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410-129

●송파구공고제1994-10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5. 20

송 파 구 청 장

1. 양도인가연월일 : 1994. 5. 11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토공사업(면허번호 91-서울-01-177)
3.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성명

가. 양도자 : 부장엠텐홀 대표 김용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75-2

나. 양수자 : 흥민건설(주) 대표 박홍남,
 김점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30-1

●관악구공고제1994-109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건설업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994. 5. 20

관 악 구 청 장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상 로	대표자	영업 소 개 지	위 반 내 용	행정 처 부 사 항	처 분 일 자
철근 92 서울 10-81	삼오전업(주)	박종원	관악구 봉천동 1659-4	건설업법 제16조의2	면허취소	1994. 5. 12

●은평구공고제1994-1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 10. 24), 은평구고시 제4호(1992. 3. 4)로 재결정 및 지적승인된 갈현동 321~31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은평구고시 제19호(1993. 4. 27)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동 공고내용을 토착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공고로 갈

음하고 관계도서는 은평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토착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4. 5. 20

은 평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1994. 5~1994. 5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청 토목과
 다. 공람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당초 : 갈현동 321-100~311-1
 변경 : 갈현동 321-100~319-6
 나) 사업의 종류·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갈현동 321~310간 도로개설 공사

- 다) 사업규모
 당초 : 도로개설 B=6~7m,
 L=140m

변경: 도로개설 B=6~7m, L=85m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 청장 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당초: 인가일~1994. 12. 31 변경: 인가일~1995. 2. 28 바) 사용·수용할 토지·건물(지장물)조서 : 아래											
토지 및 건물(지장물)조서													
○공사명: 갈현동 321~31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지목	토지		건물(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총면적(m ²)	편입면적(m ²)	종류	구조	총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갈현동 321-100	담	203	203					당초: 마포구 동교동 197-42 변경: 은평구 녹번동 84	곽유지			
					회양목 향나무 오염송 주목 대추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능수화 라일락 목련 정원석			7주 3주 1주 3주 6주 4주 1주 1주 1주 1주 300개	은평구 갈현동 310-1 (평창농원)	정준모			
					천막 화장실 대문 소담 나	채래식 철망 철재 시멘블록 무	1식 1식 1식 1식 2주	서대문구 천연동 120-83	곽영섭			지장물 추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건물(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총면적(m)	면적(m)	종류	구조	총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2	갈현동 322-10	도	231	231					은평구 녹은평구			
3	318-1	대	36	36					은평구 갈이재동			
					건물	무허가주택		42				
4	319-6	도로	108	108					중구 대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5	317-56	"	36	36					은평구 녹은평구			
6	당초: 갈현동 311-3 변경:	전	226	226					은평구 갈현동 314	수국사 중산동 16-6-7	과성현(가치)로	사업계획변경으로 제외
7	당초: 갈현동 314 변경:				담장	시멘블록문질재문		2x40 1식	"	"	"	"

●동대문구공고제1994-11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4. 5. 20

동대문구청장

- 1) 양도인가일: 1994. 5. 9
- 2) 업종 및 면허번호
석공사업 제 중남04-9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대광석재(주)	(주)성암석재
대표자	이영일	김병훈
영업소재지	동대문구 제기2동 148-20	강남구 역삼동 786-17
도급한도액	1,000,000,000원	729,360,000원

●강남구공고제1994-136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우리구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

달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4. 5. 20
강남구청장

가. 공고명단: 아래

등록말소업체명단
(자본금 미달)

(단위: 백만원)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강남구)	자본금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1	90-30	(주)가람건설	윤석기	대치동 977-12	100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	94. 5. 10
2	88-17	(주)가정주택건설	김진철	역삼동 837-19	100	"	"	"
3	91-17	(주)가흥	이호림	삼성동 168	100	"	"	"
4	91-108	월드주택개발	백병주	논현동 204-4	285	"	"	"
5	90-5	(주)개포건설	박복정	대치동 511	100	"	"	"
6	89-28	(주)거문토전	유병호	논현동 215	100	"	"	"
7	91-193	거삼공영(주)	강기철	역삼동 799-25	100	"	"	"
8	92-73	(주)거양주택	김관호	역삼동 824-22	100	"	"	"
9	87-3	전국건설(주)	김종남	역삼동 788-35	100	"	"	"
10	91-273	(주)건양구영	이종윤	포이동 243-5	100	"	"	"
11	84-10	(주)경일주택	이차열	역삼동 785-13	200	"	"	"
12	91-107	(주)공간산업	김국희	역삼동 834-20	100	"	"	"
13	92-28	관영건설(주)	홍기중	역삼동 662-15	100	"	"	"
14	91-128	구봉건설(주)	우세균	신사동 588-7	200	"	"	"
15	91-29	(주)금단전영	손홍식	역삼동 707-1	100	"	"	"
16	92-3	금당산업	김용곤	역삼동 789-2	100	"	"	"
17	89-135	(주)금양기업	김천호	논현동 68-7	100	"	"	"
18	91-141	(주)기보건설	김영실	신사동 516-11	100	"	"	"
19	91-227	가성유통산업(주)	박치건	청담동 126-7	100	"	"	"
20	91-159	나일관광개발(주)	정희원	역삼동 832-3	100	"	"	"
21	92-40	남양주택건설(주)	채홍진	역삼동 798-30	100	"	"	"
22	91-84	남흥건설(주)	이대천	역삼동 820-9	100	"	"	"
23	91-18	노아건설(주)	노영식	청담동 38-27	100	"	"	"
24	92-8	(주)녹산토전	임환수	신사동 502-1	100	"	"	"
25	92-42	다림건축	신인열	논현동 244-6	100	"	"	"
26	91-211	(주)다봉	양관률	역삼동 798-29	100	"	"	"
27	91-175	단비건설(주)	전태준	포이동 245-6	100	"	"	"
28	90-250	(주)대룡종합개발	이성진	역삼동 736	100	"	"	"
29	91-157	(주)대림주택건설	남대희	신사동 653-19	100	"	"	"
30	90-219	(주)대아주택건설	김경섭	청담동 7-20	100	"	"	"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강남구)	자본금	취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31	92-57	대원전업(주)	원혁호	도곡동 433-1	100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	94.5.10
32	91-296	대화환경	정감모	역삼동 681-7	100	"	"	"
33	91-249	도림주택건설	최상섭	포이동 261	275	"	"	"
34	89-7	(주)동풍주택	윤건혁	역삼동 816-3	100	"	"	"
35	91-219	동보상영(주)	손광호	대치동 987-19	200	"	"	"
36	91-45	(주)라인주택	박상영	청담동 131-1	100	"	"	"
37	90-231	(주)동서라이프	제정호	논현동 111-31	100	"	"	"
38	92-78	동승프라자	노영순	논현동 122-8	100	"	"	"
39	91-284	동호건설산업(주)	이석주	청담동 76-4	100	"	"	"
40	92-1	동호하우스콘(주)	김형진	논현동 6-9	100	"	"	"
41	90-143	(주)두리주택건설	이철호	역삼동 790-9	100	"	"	"
42	89-141	두보종합개발(주)	박현근	도곡동 420-15	100	"	"	"
43	92-68	로마산업개발(주)	전화영	논현동 10-5	100	"	"	"
44	91-187	(주)로케트산업	윤영수	신사동 587-16	100	"	"	"
45	92-84	(주)금호건설	김종훈	청담동 124-5	100	"	"	"
46	92-24	매산건설(주)	윤훈덕	논현동 18-3	100	"	"	"
47	92-46	매산건설(주)	최창규	청담동 1	100	"	"	"
48	89-65	(주)영우건설	최우균	삼성동 44-18	100	"	"	"
49	91-275	(주)모던주택	신영현 외 2	포이동 164-6	100	"	"	"
50	90-244	목원진흥건설	김성덕	역삼동 727-7	100	"	"	"
51	91-231	문영주택건설(주)	문영주	논현동 159-17	100	"	"	"
52	91-142	미광주택(주)	김무용 외 1	논현동 16-2	100	"	"	"
53	91-156	미려산업(주)	곽병상	청담동 40-1	100	"	"	"
54	92-15	민영자이안트주택 건설(주)	유동길	논현동 242-30	100	"	"	"
55	91-252	(주)반도프로세스	이인수	역삼동 832-3	100	"	"	"
56	92-75	(주)방신주택	조태진	역삼동 707-38	100	"	"	"
57	91-34	백도건설(주)	백년기	논현동 7-15	100	"	"	"
58	90-230	(주)백송건설	김종완	신사동 554-14	100	"	"	"
59	91-65	(주)범신평영	이동연	논현동 91-7	100	"	"	"
60	88-39	(주)벨벳주택	최영주	논현동 16-51	100	"	"	"
61	90-138	보광개발	강창수	신사동 528-3	230	"	"	"
62	86-17	보영건설(주)	김한돈	삼성동 1	200	"	"	"
63	92-9	(주)부석건설	최원호	삼성동 77-17	100	"	"	"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강남구)	자본금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64	92-19	(주)뿌리건설	이광치	역삼동 811-3	100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	94.5.10
65	91-260	(주)삼본엔터프라이스	양형준	삼성동 170-3	100	"	"	"
66	92-70	삼연건설(주)	정연도	논현동 12-14	100	"	"	"
67	92-29	(주)삼원전영	이종규	논현동 192-22	100	"	"	"
68	91-101	(주)삼희엔지니어링	김태우	삼성동 140-6	210	"	"	"
69	89-123	삼록건설(합)	허성수	도곡동 414-5	265	"	"	"
70	91-207	(주)신강개발	문춘렬	역삼동 779-9	110	"	"	"
71	90-209	(주)상익건설	주상익	포이동 262-10	100	"	"	"
72	91-217	서림예건(주)	이호영	삼성동 166-5	105	"	"	"
73	88-32	(주)서울진흥	김병태	신사동 618-4	100	"	"	"
74	90-79	(주)서원리조트	박종현	논현동 126-2	100	"	"	"
75	92-11	서화건설(주)	이영술	역삼동 707-38	100	"	"	"
76	91-23	(주)석산공영	김일호	도곡동 942	100	"	"	"
77	91-48	(주)선경주택	서준진 외 1	역삼동 705-14	100	"	"	"
78	86-13	선련건설(주)	정동욱 외 2	청담동 132	100	"	"	"
79	88-2	성림건설(주)	임재성	역삼동 724-42	100	"	"	"
80	91-259	성실개발(주)	윤금영	개포동 186-1	100	"	"	"
81	92-58	성암주택건설(주)	박종철	논현동 4-21	100	"	"	"
82	91-81	(주)성일개발	김삼성	논현동 175-14	100	"	"	"
83	91-33	(주)성해산업개발	박형민	도곡동 552-6	200	"	"	"
84	91-42	세신주택(주)	김홍기	신사동 515-617	100	"	"	"
85	91-243	세진국토개발(주)	이영규	포이동 192-1	100	"	"	"
86	87-1	신라주택(주)	임덕빈	논현동 117	100	"	"	"
87	92-12	신장건설(주)	신현승	청담동 119-11	150	"	"	"
88	91-254	(주)신화석상	강신욱	논현동 88-11	100	"	"	"
89	92-56	아리스건설(주)	이성매	청담동 125-16	100	"	"	"
90	90-78	(주)아미건축의장	연강섭	신사동 628	100	"	"	"
91	91-23	(주)아세아주택개발	유명화 외 1	논현동 208-2	100	"	"	"
92	91-135	(주)아시아건설	오창호	신사동 536-16	100	"	"	"
93	91-4	(주)아영전업	장수익	포이동 214-1	100	"	"	"
94	92-60	(주)아주인테리어	양동호	역삼동 628	100	"	"	"
95	89-51	(주)어반	김광덕	삼성동 34-21	100	"	"	"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강남구)	자본금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96	89-145	(주)에덴주맥	김성근	포이동 247-4	100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	94.5.10
97	92-35	연봉주맥건설(주)	단태환	논현동 183-23	100	"	"	"
98	92-27	당림공영	조남길	역삼동 783-5	100	"	"	"
99	90-217	(주)영희건설	변영희	포이동 218-2	100	"	"	"
100	91-127	(주)에인주맥	최학규	신사동 512-17	100	"	"	"
101	90-140	(주)독물산업	손재경	포이동 241-4	100	"	"	"
102	90-119	(주)쿠송주맥	김경동	역삼동 574	100	"	"	"
103	91-30	우주건설(주)	신준식	역삼동 828-8	100	"	"	"
104	90-87	우영상사(주)	서수근	대치동 889-65	100	"	"	"
105	91-50	원강건설(주)	이성자	청담동 49-21	100	"	"	"
106	92-55	원효건설(주)	김선봉	역삼동 790	100	"	"	"
107	89-10	유경산업(주)	유명근	대치동 942-20	100	"	"	"
108	90-27	(주)동원건설	김홍락	역삼동 785-2	100	"	"	"
109	89-86	(주)동노피자	이건환	압정동 1외 1	100	"	"	"
110	92-5	(주)용원건설	김재수	논현동 242-63	100	"	"	"
111	91-63	(주)은석양립	이희수	잠실동 44-7	100	"	"	"
112	90-153	인킹건설(주)	이문종	논현동 91-7	100	"	"	"
113	91-220	카당건설(주)	김재호	대치동 1009-12	100	"	"	"
114	91-151	(주)권림건설	전재근	신사동 548-4	100	"	"	"
115	91-238	정림의장산업(주)	임병철	역삼동 822-5	200	"	"	"
116	91-146	(주)제일진공개발	박경순	역삼동 651-1	100	"	"	"
117	91-129	조원인터내셔널	신현철	도곡동 454-5	120	"	"	"
118	91-9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무스함국로빌	최정성	논현동 275-5	100	"	"	"
119	89-55	주광종합건설(주)	유경수	청담동 80-21외 1	100	"	"	"
120	90-182	주황종합개발(주)	윤효자	역삼동 810-10	100	"	"	"
121	90-99	자우건설(주)	신홍선	역삼동 642-5	100	"	"	"
122	89-79	(주)진석개발	한철하	역삼동 840	103	"	"	"
123	92-30	첨방주맥(주)	이해문	삼성동 160-18	100	"	"	"
124	92-49	(주)천지유니버스	민병상	역삼동 604-3	100	"	"	"
125	88-24	청구산업개발(주)	이재진	논현동 192-22	100	"	"	"
126	91-267	홍도주맥	전상근	논현동 63-8	200	"	"	"
127	92-2	홍석건설	김우석	논현동 61-16	100	"	"	"
128	84-16	(주)정암건설	김광준	역삼동 740-10	100	"	"	"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강남구)	자본금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129	91-288	(주)청운공영	문승기	역삼동 718-23	100	자본금 미달	등록말소	94.5.10
130	90-106	(주)쇼이스	최승용	신사동 561-30	200	"	"	"
131	92-50	코스모스종합개발 (주)	서정재	신사동 505-8	100	"	"	"
132	90-45	(주)평일물산	이금노	도곡동 552-14	100	"	"	"
133	92-59	풍화산업(주)	이용덕	역삼동 726-15	200	"	"	"
134	92-31	하림건설	김정선	일원동 666-3	100	"	"	"
135	90-183	한국도서관종합개 발(주)	오문학	신사동 581-11	101	"	"	"
136	89-103	한국산업개발(주)	박인수	역삼동 828-10	211	"	"	"
137	92-13	(주)한국홈테크	최저실	삼성동 106-6	150	"	"	"
138	91-138	(주)한신랜드	장용규	논현동 202-9	100	"	"	"
139	91-51	행림주택(주)	유동수	도곡동 942-2	100	"	"	"
140	90-164	(주)현성건설	김삼선	역삼동 788-35	100	"	"	"
141	88-59	(주)형일건설	민웅기	청담동 70-17	203	"	"	"
142	91-47	형일공영(주)	민웅기	청담동 70-17	100	"	"	"
143	91-112	(주)홍림주택	임병길	논현동 165	100	"	"	"
144	91-286	홍양공영(주)	박재동	청담동 48-1	100	"	"	"
145	90-86	효안산업(주)	이강수	역삼동 733-19	100	"	"	"
146	92-37	효천물산(주)	김규복	역삼동 708-27	100	"	"	"
147	92-74	희봉건설(주)	정연도	신사동 598-1	100	"	"	"
148	91-264	희산건설(주)	전창룡	대치동 1021-2	100	"	"	"
149	90-191	우영건설	김낙진	역삼동 635-4	332	"	"	"
150	91-1	주옥주택상사	이정경	대치동 913-11	367	"	"	"
151	91-202	해인건설	박인호	논현동 229-2	532	"	"	"
152	91-283	(주)유상공영	김형성	도곡동 518-9	100	"	"	"
153	92-4	동국도시개발(주)	이홍복	역삼동 689	100	"	"	"
154	92-14	(주)만조건설엔지 니어링	이종도	삼성동 127	100	"	"	"
155	92-47	대정전영(주)	김동화	논현동 115-1	200	"	"	"
156	92-44	정각건설(주)	윤상섭	논현동 19-2	100	"	"	"
157	91-214	(주)성경코퍼레이션	서덕원	삼성동 44-10	100	"	"	"
158	91-233	(주)세진건축	조재홍	도곡동 448-1	100	"	"	"
159	89-18	중원주택건설	최한호	논현동 148-2	200	"	"	"
160	89-59	(주)더우주택건설	김연수	논현동 268-4	100	"	"	"
161	90-10	영동건설(주)	김병욱	청담동 52-8	200	"	"	"

●서초구공고제1994-154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건설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되어 동법 제
 5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
 정지처분 하였음을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4. 5. 20
 서 초 구 청 장

업종 및 면허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 유	조 치	비 고
설비 12-226	(주)양한공영	김동양 김종술	양재동 246-1	면허기준 미 달 (자본금)	영업정지 6월 (94. 5. 10~ 94. 11. 9)	가중. 영업정 지중으로 정 지기간 연장
철물 82-11-64 설비 82-12-118	진우전공(주)	김진하	서초동 1487-2	"	"	가 중
토공 92-02-339 철콘 92-10-425	길림건설(주)	이규창	양재동 402-1	"	영업정지 2월 (94. 5. 10~ 94. 7. 9)	경 감
토공 전복02-167 철콘 전복10-195	(유)강오토건	오종현	서초동 1580 대원빌딩 9- 204	"	"	"
의장 91-서울-01-62	헬씨건설(주)	김창규	양재동 70-3	"	"	"
의장 91-대구-01-34	(주)태평양 산 업	권옥금	서초동 1302- 45	"	"	"
의장 91-서울-01-196	(주)창전디씨	권오성	양재동 365	"	"	"

●서초구공고제1994-155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다음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를 자진반납하
 여 아래와 같이 면허취소하고 공고합니다.
 1994. 5. 20
 서 초 구 청 장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면허 유효 기간
의장 제91-01-6	(주)디자인그룹, 경원	노 세 윤	양재동 254-6	91. 5. 31~94. 5. 30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4-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5. 20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5. 6	성동구 자양동 427-7선 한강	하천	1,035.9㎡	유선장	94. 5. 6~ 94. 12. 31	성동구 성수2 가 1동 645-1	아리랑보트(주) 대표이사 임원식

건설부고시

●건설부고시제1994-164호
사업인정고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고시합니다.
1994. 5. 20
건설부장관

기 업 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 조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덕 1-1지구(1단계) 주거환 경개선사업(도로개설공사)	마포구 공덕동 5-76 대 40㎡ 의 12필지 총 538㎡	닷 붙 임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공덕 1-1지구(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공사) 공덕 1-1 지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구 또는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마포구 공덕동	5-76 대	40	40	도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마포구 공 덕동 5-31	임정길	중 구 남대문 로2 가 9-1	국 민 은 행(태 평로지 점)	근저당권설정 최고액 : 26,000천원
2	"	5-77 "	8	8	"	"	마포구 공 덕동 5-32	김정배			
3	"	5-81 "	10	10	"	"	마포구 공 덕동 5-34	장삼래			
4	"	5-83 "	9	9	"	"	마포구 공 덕동 5-35	이홍연			공유자지분 81.04/86
							용산구 서 계동 238- 16	오영욱			공유자지분 4.96/86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구 또는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5	마포구 공덕동	5-95	대 3	3	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마포구 공 덕동 22-8	정봉화			
6	"	6-81	" 1	1	대	"	마포구 공 덕동 6-34	박봉조			
7	"	6-82	도 로	2	2	도로	"	마포구 공 덕동 5-6	김구만 (운)		
8	"	6-95	" 32	32	"	"					
9	"	7-266	대 9	9	대	"	종로구 화 동 67-1	고 철			
10	"	7-10	" 334	334	도로	"					
11	"	4-202	" 31	31	대	"	마포구 공 덕동 4-25	박제린			
12	"	4-248	" 18	18	도로	"	중구 남창 동 50	이우분	성산동 275-3	마 포 구 청	압 류
13	"	30-34	" 1	1	대	"	동작구 옥 석동 52-5	김봉춘			
계		13필지		538㎡							

수용할 토지 색목조사

○사업명: 공덕 1-2지구(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공사) 공덕 1-2 지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구 또는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마포구 공덕동	17-126	대 1	1	도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마포구 공 덕동 38-22	고용선 김옥진 고용선			
								고인선	마포구 아현동 339-1	(주)새 한상사	근저당권 설정 (50만원)
2	"	12-138	도 로	15	15	"	"	중구 중립 동 149-57	한태섭		
3	"	13-18	" 6	6	"	"	마포구 공 덕동 115-5	원정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용도지구 또는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마포구 공덕동	10-18대	97	97	도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용산구 창동 143	효조병건				
계		4필지		119㎡								

경찰청예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칙중개정규칙(예규)을 발령한다.

1994. 5. 16

지방경찰청장 이 기 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예규 제22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관기호및 수신처번호규칙중개정규칙

(별표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정을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직할대, 경찰서의 기관기호 및 수신처 번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중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기관명	기관기호	수신처 번호	비고
공보담당관	공보	경관 01	
감사담당관	감사	경관 02	
경무부		경부 01	
방범부		경부 02	
형사부		경부 03	
교통지도부		경부 04	
경비부		경부 05	
정보관리부		경부 06	
보안부		경부 07	
경무과	경무	경과 01	경과 01~17
인사교육과	인교	경과 02	
전산통신과	전통	경과 03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 번호	비 고
방 범 기 획 과	방 기	경 과 04	
방 범 지 도 과	방 지	경 과 05	
수 사 과	수 사	경 과 06	
형 사 과	형 사	경 과 07	
교 통 안 전 과	교 안	경 과 08	
교 통 관 리 과	교 관	경 과 09	
면 타 과	면 허	경 과 10	
경 비 1 과	경 일	경 과 11	
경 비 2 과	경 이	경 과 12	
정 보 1 과	정 일	경 과 13	
정 보 2 과	정 이	경 과 14	
보 안 1 과	보 일	경 과 15	
보 안 2 과	보 이	경 과 16	
외 사 과	외 사	경 과 17	
101 경 비 단		경 대 01	경대 01~18
22 특 경 경 호 대		경 대 02	
기 동 단		경 대 03	
기 동 단 1 기 동 대		경 대 04	
기 동 단 2 기 동 대		경 대 05	
기 동 단 3 기 동 대		경 대 06	
기 동 단 4 기 동 대		경 대 07	
국 회 정 비 대		경 대 08	
정부종합청사경비대		경 대 09	
김포국제공항경찰대		경 대 10	
105 전투경찰중대		경 대 11	
201 전투경찰중대		경 대 12	
602 전투경찰중대		경 대 13	
603 전투경찰중대		경 대 14	
605 전투경찰중대		경 대 15	
606 전투경찰중대		경 대 16	
607 전투경찰중대		경 대 17	
경 찰 특 공 대		경 대 18	선 설
중 부 경 찰 서		경 서 01	경서 01~30
중 로 경 찰 서		경 서 02	
남 대 문 경 찰 서		경 서 03	
서 대 문 경 찰 서		경 서 04	
등 대 문 경 찰 서		경 서 05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 번호	비 고
용 산 경 찰 서		경 서 06	
성 북 경 찰 서		경 서 07	
청 량 리 경 찰 서		경 서 08	
마 포 경 찰 서		경 서 09	
영 등 포 경 찰 서		경 서 10	
성 동 경 찰 서		경 서 11	
노 량 진 경 찰 서		경 서 12	
동 부 경 찰 서		경 서 13	
서 부 경 찰 서		경 서 14	
북 부 경 찰 서		경 서 15	
남 부 경 찰 서		경 서 16	
중 량 경 찰 서		경 서 17	
강 남 경 찰 서		경 서 18	
관 약 경 찰 서		경 서 19	
강 서 경 찰 서		경 서 20	
강 동 경 찰 서		경 서 21	
중 암 경 찰 서		경 서 22	
구 로 경 찰 서		경 서 23	
서 초 경 찰 서		경 서 24	
암 천 경 찰 서		경 서 25	
송 파 경 찰 서		경 서 26	
노 원 경 찰 서		경 서 27	
방 배 경 찰 서		경 서 28	
은 평 경 찰 서		경 서 29	
도 봉 경 찰 서		경 서 30	

인 사 발 령

7급이하 공무원 면직

●1994년 5월 10일자

영 제237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심 강 유 471010-1030156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의회사무처 (의안담당관)	지방행정 주 사 보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2	안 권 옥 610526-1559713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 행정서기보
<p>전산직 9급 공무원 정규임용(시보해제)</p> <p>●1994년 5월 11일자 영 제238호</p>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유 상 연	지방전산서기보에 임함 전산통계담당관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전산 서기보시보
2	김 남 수	지방전산서기보에 임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	"
3	장 미 경	"	"	"
4	정 은 주	"	"	"
5	유 선 아	"	"	"
6	한 창 호	"	"	"
7	윤 한 용	"	"	"
<p>8급 공무원 면직</p> <p>●1994년 5월 11일자 영 제239호</p>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신 금 식 610516-201192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부군로 청소년회관	지방행정서기
<p>6급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p> <p>●1994년 5월 14일자 영 제240호</p>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노 윤 정 510121-2067211	강 동 구 전 출	강 남 구	지방약무 주 사

3급 공무원 파견 및 직무대리				
●1994년 5월 13일자				영 제241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주 화 종	내무국(도시개발공사)파견 (94. 5. 13--95. 5. 12)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지 방 부이사관
2	이 용 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직 무 대 리	감사담당관	서 기 관
지방연구사 면직				
●1994년 5월 14일자				영 제242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최 준 식 640111-133282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진 연구사
9급 기술직공무원 전도				
●1994년 5월 14일자				영 제243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이 병 우 700509-2031111	전자계산소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통신 서 기 보
기술직공무원 특별임용(국비→지방비)				
●1994년 5월 13일자				영 제244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홍 성 실 600605-1460015	지방임업서기	영등포구	임업서기
2	김 장 석 680827-1808418	임업서기보	영등포구	지방임업 서 기 보

기능직공무원 전보				
●1994년 5월 16일자				영 제245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장 마 경 670819-2038021	건설행정과 파견 (94. 5. 16~95. 5. 15)	서울대공원 관리(사)	지방조무원 (검수표10등급)
2	조 현 순 611020-2258618	세종문화회관	건설행정과	· (검수표9등급)
기능직 전보 및 인사교류				
●1994년 5월 16일자				영 제243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안 영 복 411110-1068717	경소사업본부	정신병원	지방건축원 (9등급)
2	이 일 권 621116-1046113	용산구 전출	서울대공원 관리(사)	지방농림원 (원예9등급)
3	조 옥 동 490725-1069615	관악구 전출	·	·
4	우 홍 구 491107-1222211	노원구 전출	용산구	지방농림원 (원예10등급)
5	이 윤 규 690228-1162120	강서구 전출	양천구	·
6	장 동 래 630515-1889212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서초구	·
7	정 선 수 390223-1069516	종로구 전출	강남구	지방농림원 (원예9등급)
8	임 종 훈 431018-1235039	양천구 전출	서대문병원	지방위생원 (9등급)
9	김 형 길 500404-1000711	서대문병원	양천구	지방위생원 (10등급)
10	이 향 순 410930-2390911	시립대학교	총무과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11	이 술 자 540509-2038014	서대문병원	종합건설본부	·
12	황 성 태 621010-1047134	양천구 전출	청소사업본부	·

연번	성명	발령내용	원 직	
			부서	직급
13	최시영 660520-1067135	서대문병원	청소사업본부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14	강명화 370102-1025511	동대문구전출	시립대학교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15	전노미 381220-201732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16	진영관 401011-1030026	동부건설사업소	"	"
17	이강년 440607-134782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18	박순자 481010-2057522	강남구전출	체육시설 관리(사)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19	최형연 480520-2023113	총무과	"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20	장금년 460903-2068837	"	"	"
21	김명순 460528-2056434	서대문병원	보건환경 연구원	"
22	오경례 481104-2010818	성북구전출	동부병원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23	황정분 410709-2067329	구로부너복지관	서대문병원	"
24	연동철 510526-1042514	총무과	"	"
25	박옥애 460309-2066714	동부병원	"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26	김용구 580129-1896818	용산구전출	"	"
27	임명혁 480529-1036615	정신병원	"	"
28	유민순 400615-2042412	"	"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29	박양원 461005-2168610	"	"	"
30	유춘자 440601-2042519	마포부너복지관	"	"

연번	성명	박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31	장 옥 남 350118-2067311	서 대 문 병 원	정 신 병 원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32	이 영 순 470827-2676710	"	"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33	박 중 결 570912-1446928	"	"	"
34	최 경 훈 490929-1002012	시 립 대 학 교	동 부 군 로 청 소 년 회 관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35	구 영 순 360602-2024613	동 대 문 구 전 출	구 로 부 녀 복 지 관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35	김 연 순 391106-2019713	새 중 문 화 회 관	"	"
37	유 정 옥 370906-2024627	노 원 부 녀 복 지 관	"	"
38	김 춘 화 400225-2024615	시 립 대 학 교	"	"
39	이 순 덕 370907-2526213	구 로 부 녀 복 지 관	마 포 부 녀 복 지 관	"
40	최 순 자 470710-2030332	송 과 구 전 출	노 원 부 녀 복 지 관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41	김 순 열 630730-2069638	보 건 화 강 연 구 위	최 소 년 직 업 훈련 원	"
42	엄 정 열 420309-2056611	구 로 부 녀 복 지 관	동 부 전 설 사 업 소	"
43	김 홍 갑 550225-1382212	지 립 대 학 교	증 량 하 수 처리 사업 소	"
44	이 방 영 430326-1047217	서 대 문 병 원	가 양 하 수 처리 사업 소	"
45	안 용 규 500207-1079831	시 립 대 학 교	용 산 구	지방위생원 (사역9등급)
46	금 기 준 610820-1051726	구 로 부 녀 복 지 관	구 로 구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47	안 영 희 480504-2005117	강 동 구 전 출	강 남 구	"
48	박 기 경 450130-1167511	체 육 시설 관리 사업 소	송 과 구	"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지	직 급
49	이영미 690803-2721524	청소사업본부	총구과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50	이복순 520306-2047318	상수도사업본부과전 (94. 5. 16~94. 12. 31)	녹지과	" (필기9등급)
51	김갑연 661010-2029830	동대문구전출	상수도 사업본부	" (필기10등급)
52	최병민 431204-2024611	"	"	" (필기9등급)
53	김미경 630907-2475915	구로구전출	"	"
54	이수남 570506-2017721	지하철건설본부	체육시설 관리(사)	"
55	김미연 550323-2056116	양천구전출	"	"
56	이형숙 650820-2312358	관악구전출	"	" (필기10등급)
57	이화섬 570919-2010816	등부병원	보건환경 연구원	" (필기9등급)
58	최상희 640318-2231111	녹지과	등부병원	" (필기10등급)
59	진무근 630411-1057123	용산구전출	중구	"
60	정영순 580130-2058136	강동구전출	용산구	지방사무보조원 (필기9등급)
61	유순복 581226-2017915	청소사업본부	성동구	"
62	허은주 621201-2380316	관악구전출	"	"
63	최진일 440323-1018419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동대문구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64	손은영 690316-2009425	"	"	"
65	송윤석 491218-1454816	송파구전출	노원구	" (필기9등급)
66	이병대 680727-1167416	종로구전출	"	" (필기10등급)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67	조용성 630724-2046619	상수도사업본부	마포구	지방사무보조원 (필기9등급)
68	정호택 580917-1011418	공보 2 담당관	강서구	" (필기10등급)
69	장옥자 640630-2536418	양천구 전출	구로구	"
70	이상석 420806-1785411	강남구 전출	관악구	" (필기9등급)
71	성윤희 670502-2037118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송파구	" (필기10등급)
72	권명자 440420-2069019	한강관리사업소	강동구	" (필기9등급)
73	박은희 420423-2024711	영등포구 전출	서림부너 보호소	지방조무원 (지도9등급)
74	김일애 400905-2041411	부너 보호소	영등포구	"
75	이재성 550207-1810411	성동구 전출	송파구	"
76	손주홍 500519-1069617	상수도사업본부	가양하수 처리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10등급)
77	장구준 460302-1000414	"	"	"
78	황병식 620208-1036715	중구 전출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조무원 (집배9등급)
79	권희숙 630812-2243219	용산구 전출	중구	"
80	장수경 621008-2226616	상수도사업본부	용산구	"
81	강인순 440401-1057023	구로구 전출	"	" (검침9등급)
82	박정근 671223-1540525	노원구 전출	성동구	" (검침10등급)
83	송영상 470108-1058037	성북구 전출	동대문구	"
84	전명식 450527-1010226	노원구 전출	"	"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85	박재순 430617-1068820	송파구 전출	동대문구	지방조무원 (검침10등급)
86	한기배 631227-1031110	도봉구 전출	동대문구	"
87	장홍선 610430-1009822	노원구 전출	"	"
88	고은태 530823-1017516	도봉구 전출	성북구	"
89	김상범 571105-1066723	노원구 전출	"	"
90	최순영 520529-1645911	동대문구 전출	"	"
91	전용섭 410119-1001414	양천구 전출	"	"
92	윤강준 550328-1067913	송파구 전출	도봉구	"
93	장광섭 520708-1057911	동대문구 전출	노원구	"
94	백전필 611107-1001212	성북구 전출	"	"
95	안영철 630704-1046115	"	"	"
96	유인란 640501-1221629	"	"	"
97	이장하 601112-1243421	동대문구 전출	강서구	"
98	김강희 541217-1149518	"	구로구	"
99	강은희 600707-2057128	송파구 전출	관악구	지방조무원 (검침9등급)
100	정상호 600621-1057725	관악구 전출	강남구	" (검침10등급)
101	김철영 590223-1019010	송파구 전출	"	"
102	박병찬 570919-1403016	강남구 전출	송파구	"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03	안경희 501023-1036612	강남구전출	송과구	지방조무원 (김집10등급)
104	유유진 531011-1012019	동대문구전출	"	"
105	김윤희 670720-2057011	세종문화회관	체육시설 관리(사)	지방조무원 (검수표10등)
106	노미선 640504-2005211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 (검수표9등)
107	유금자 671229-2029910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 (검수표10등)
108	이희수 681108-2066910	동작구전출	"	"
109	오대순 620925-2000513	세종문화회관	동작구	지방조무원 (검수표9등)
110	구기연 670414-2024413	중구전출	성동구	지방조무원 (주차단속10)
111	장운실 660521-2030414	노원구전출	성북구	"
112	김미옥 660904-2458014	성북구전출	노원구	"
113	이현경 700113-2109022	중구전출	송과구	"
114	신호선 351007-1067919	관악구전출	총무과	지방방호원 (9등급)
115	권순철 480525-1057214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 (10등급)
116	정인기 640115-1560419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시립대학교	"
117	이희범 390822-1017712	시립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사)	" (9등급)
118	최태홍 491128-1690311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
119	한성호 611205-1476622	은평구전출	"	" (10등급)
120	김재신 420326-1069018	송과구전출	동부근로 청소년회관	" (9등급)

연번	성명	박령내용	직	
			부서	직급
121	정용섭 411016-10673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송파구	지방방호원 (10등급)
122	김불안 540618-1635210	공무원교육원	"	"
123	이준호 530830-1037525	중구전출	경조사업본부	" (경비10등급)
124	양기봉 561106-1646217	남부건설사업소	체육시설 관리(사)	" (경비9등급)
125	장인전 650105-1057116	노원구전출	"	"
126	김종태 431010-1462416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 (경비10등급)
127	김상철 600620-1063645	은평구전출	경신병원	"
128	유동훈 480215-1006524	중랑구전출	부녀보호소	" (경비9등급)
129	김미자 430226-2079715	관악구전출	"	"
130	정종훈 380428-1006018	서초구전출	남부근로 청소년회관	"
131	박희정 620829-1548015	동대문구전출	동부근로 청소년회관	" (경비10등급)
132	김정민 580514-1023910	북부건설사업소	청소년직업 훈련원	" (경비9등급)
133	이동화 610224-1916819	시립대학교	동부건설 사업소	" (경비10등급)
134	한광중 600601-1481131	강남구전출	남부건설 사업소	"
135	이기학 430312-231727	동작구전출	"	" (경비9등급)
136	유제권 561116-1080113	부녀보호소	북부건설 사업소	"
137	박종선 490807-1009513	노원구전출	"	"
138	오세철 530320-1388726	영등포구전출	공원녹지 관리(사)	" (경비10등급)

연번	성 명	발 명 내 용	권 지	
			부 서	직 급
139	김 종 대 580310-1524515	구 로 구 전 출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지방방호원 (경비10등급)
140	한 선 동 421230-1011439	재 산 관 리 과	"	" (경비9등급)
141	임 경 중 470802-1037810	서 대 문 구 전 출	"	" (경비10등급)
142	장 진 주 420926-1121032	남 부 건 설 사 업 소	서 울 대 공 원 관 리 (사)	" (경비9등급)
143	서 금 만 610120-1519829	양 천 구 전 출	한 강 관 리 사 업 소	" (경비10등급)
144	전 옥 성 530927-1540519	남 부 근 로 쉼 소 년 회 관	탄 천 하 수 처 리 사 업 소	"
145	홍 승 표 541228-1023611	마 포 구 전 출	가 양 하 수 처 리 사 업 소	"
146	이 일 510405-1455027	중 구 전 출	중 로 구	"
147	유 명 걸 400207-1079736	재 육 시설 관리 사업소	중 구	" (경비9등급)
148	윤 창 노 381212-1023916	동 부 건 설 사 업 소	용 산 구	"
149	김 윤 중 420615-1018317	재 육 시설 관리 사업소	중 량 구	"
150	배 한 주 590626-1079118	송 파 구 전 출	"	" (경비10등급)
151	송 원 배 520811-1025810	중 량 구 전 출	노 원 구	" (경비9등급)
152	김 동 중 620310-1348415	북 구 건 설 사 업 소	"	" (경비10등급)
153	양 동 일 590906-1580619	용 산 구 전 출	은 평 구	"
154	전 종 환 380522-1042215	중 구 전 출	"	" (경비9등급)
155	이 장 호 480827-1786212	한 강 관 리 사 업 소	"	"
156	신 대 수 561207-1029317	가 양 하 수 처 리 사 업 소	서 대 문 구	" (경비10등급)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57	정 회 성 571114-1037412	은 평 구 전 출	마 포 구	지방방호원 (경비10등급)
158	김 칠 수 510917-1382513	구 로 구 전 출	양 천 구	"
159	박 상 식 490201-1653015	영 등 포 구 전 출	구 로 구	" (경비9등급)
160	강 길 석 460207-1041214	서 초 구 전 출	"	" (경비10등급)
161	지 용 일 490320-1357623	영 등 포 구 전 출	"	"
162	박 청 계 371114-1231619	부 너 보 호 소	영 등 포 구	" (경비9등급)
163	백 권 훈 510626-1811011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	"
164	이 용 식 490113-1004914	정 신 병 원	영 등 포 구	" (경비10등급)
165	이 재 경 480202-1057735	영 등 포 구 전 출	동 작 구	"
166	김 영 기 420501-1000113	강 남 구 전 출	관 약 구	" (경비9등급)
167	최 재 전 630926-1381018	송 파 구 전 출	서 초 구	"
168	이 린 권 600420-1467219	구 로 구 전 출	강 남 구	" (경비10등급)
169	최 국 환 600504-1002313	노 원 구 전 출	"	"
170	이 호 일 651219-1233211	서 대 문 구 전 출	송 파 구	"
171	최 정 환 470612-1559124	종 로 구 전 출	"	"
172	이 재 로 480912-1009518	송 파 구 전 출	세종문화회관	지방운전원 (9등급)
173	이 윤 범 420601-1010213	상수도사업본부파견 (94. 5. 16~95. 5. 15)	중 랑 하 수 처 리 (사)	지방조무원 (수도10등급)
174	박 재 규 650607-1458211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총 무 과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행정5급 공무원 인사고표						
●1994년 5월 14일자				영 제217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1	고용욱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관리비점	부서 중구	직급 지방행정 사무관		
6급 공무원 파견명령						
●1994년 5월 14일자				영 제248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1	서영욱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개발 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 (1994. 5. 14 ~ 1994. 10. 31)	부서 환경과	직급 지방행정주사		
공무원외여행 명령 통보						
●1994년 5월 11일자						
소속직급	성명	성년월일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이행목적
강서구 [구청장]	황정2급 도영정	41. 12. 15	일본	94. 5. 16 ~ 5. 20 (5일간)	자비구비 (\$1,370)	강서구청과 일본 동경도 오다구(대견구)와의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 연 추진 및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
공 지 사 항			▶ 근무처: 화출소, 교통, 운전, 유치장, 전산(컴퓨터)실, 행정보조, 기동대, 방법순찰대 등			
의무경찰모집안내 -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 전역후 경찰관 임용 특례 부여 - 대학생 입영연기중 인자 응시가능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1994. 5. 19 ~ 1994. 6. 7(20일 간)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 또는 경찰서 인원봉사실			
1. 모집인원 ○ 의무경찰: ○○○○명(약대 포함)			3.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1976. 12. 31 이전 출생)			

<p>자)으로서 병역을 끝하지 아니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 22, 일반대 24세 이내 졸업이 가능한 자로 지원접수일 현재, 입영동지가 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징병검사 수검자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입영동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자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징병검사 필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책 	<p>정된 자(대학생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 기피 사실(징병검사, 입영)이 있는 자 - 특수병과 또는 환군·무관후보병의 병적에 편입된 자 - 지원서 접수일 현재 대학생으로 입영동지가 된 자 또는 입영거절 연기중인 자 - 자격징거 이상의 형의 선고된 받은 자
--	---

4. 시험일자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자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표
1차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1994. 6. 10	응시원서 접수처에 게시	즉석 발표
2차 면접 시험	1994. 6. 16	1차 시험 발표시 공고	1994. 6. 18

5. 체격기준

신장(cm)	체중(kg)	흉 의 기	혈 령	혈압(mm/Hg)
165~195	55~92	신장의 1/2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이상 ▶ 환경 적응자 - 안경쓰고 0.8 이상 - 안경벗고 0.3 이상 ○ 색맹이 아닌 자 	<p>완전한 자</p> <p>145/90 이상 90/60 이하가 아닌 자</p>

6. 구타서류

- 응시원서 1통: 원서교부처에서 무료 배부
- 신체검사서 1통: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
- 학력증명서 1통: 최종학교 졸업·제학·수료 등
- 병소증명서 1통: 만 19세 이상인 자, 본적지 지방방부청장 발행
- 호적등본 1통: 현 거주지 우체국으로 송부의뢰하면 가능

7. 연락처

서울지방경찰청 진경관리계(720-1579)